발 간 등 록 번 호
11-1341000-000205-10

Ministry of Education

교육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2021.12.

교육부

| 일러두기 |

- 본 사례집에 수록된 민원 질의·회신 사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처리된 사례 중 민원 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사례들을 일부 수정·편집한 것입니다.

- 따라서, 이를 일반화하거나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 등의 근거자료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 인용된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정부 정책의 변경 등으로 적용 시점에 따라서는 본 사례집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Ⅰ 유아·특수교육

유아교육

1. 등원 제한 시 유아 학습권 보호 요청 ····· 3
2. '처음학교로' 유치원 입학지원 ····· 4
3. 유치원 CCTV 설치 관련 문의 ····· 5
4. '처음학교로' 선발방법 문의 ····· 5
5. 사립유치원 처우개선 ····· 6
6.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 문의 ····· 7

전화민원

7. 유치원 급·간식 운영관리지침서 ····· 8
8. 유치원 원감 공석 가능 여부 ····· 9
9. 교육과정 운영시간 중 귀가 가능 여부 ····· 10
10. 유치원 원아의 출결 알리미 서비스 도입 여부 ····· 10
11. 국립대학 부설 유치원 현황 ····· 11
12.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참여 서비스 관련 ····· 11
13. 유치원 원아의 전·편입학 관련 ····· 12
14. 거주지 외 타 시·도 유치원 입학 가능 여부 ····· 12
15. 처음학교로 이용 시 사전접수와 본접수의 차이 ····· 13
16. 다자녀에 태아 포함 여부 ····· 13
17. '처음학교로'에서 3지망 모두 동일 유치원 지원 가능 여부 ····· 14

특수교육

18.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관련 질의사항 ····· 15
19. 교육연수기관 해당 여부 질의 ····· 16
20.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의 복무 등 질의 ····· 17

전화민원

21. 장애이해 교육과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적 상호 인정 ····· 18

Ⅱ 초·중등교육

교육과정

1. 생명존중 및 동물보호 교육 강화 ····· 21
2. 기초 교양 교육 강화 ····· 22
3. 학교에서 수학적 개념 학습 강화 ····· 23
4. 초등 저학년 한글·수학교육 관련 문의 ····· 24
5. 학생평가 방식 관련 건의 ····· 25
6.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학생평가 ····· 26
7. 귀국학생의 재취학 구비서류 ····· 27
8.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부 발급 관련 ····· 28
9. 초·중·고 등교 일수 확대 ····· 29
10. 수학여행, 학생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의 교육과정 해당 여부 ····· 30
11. 주입식 교육에 대한 교육방식 ····· 31
12. 가정학습의 현실과 교육부의 대처 방안 ····· 32
13. 영재학교, 과학고 등 개선방안 ····· 33
14. 영재학교 신입생 선발전형 응시 문의 ····· 34
15. 자유학기제 운영의 자율성 강화 ····· 35
16. 언어 관련 내용의 국어교과 반영 ····· 36
17. 자유학년제 중학생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문의 ····· 37
18. 자유학기 활동의 주제선택 활동 편성 ····· 38
19. 서울과학고 졸업요건(학점 이수 단위) 관련 질의 ····· 39
20. 고교학점제 보충이수에 대한 궁금증 ····· 40

CONTENTS

전화민원

21. 자율고등학교(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관련 ····· 41
22. 마이스터고교 합격 후 일반고 지원가능 여부 ····· 42
23. 4월 학기제가 3월 학기제로 변경된 시기 관련 ····· 42
24. 교육부 지정 필수 영어 단어 관련 ····· 43
25. 인공지능(AI) 선도학교 명단 관련 ····· 43
26. 사이버교과서 박물관 관련 ····· 44
2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어 '논문' 관련 ····· 45
28. 지각(또는 조퇴, 결과) 3회시 결석처리 여부 ····· 45
29. 일반고 학생의 부사관 학교 입교 시 출결 처리 관련 ····· 46
30. 재수생(n수생)의 대입전형자료의 수상실적 제공 관련 ····· 46

교육복지

31.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관련 ····· 47
32. 초등학교 취학 관련 ····· 49
33. 고등학교 졸업자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문의 ····· 50
34. 한복 교복 관련 ····· 51
35. 미인정 결석 학생관리 관련 ····· 52

전화민원

36. 교육급여 지급대상 관련 ····· 53
37. 초등학교 조기입학 가능 여부 ····· 54
38. 교육비 지원 관련 ····· 54
39. 초등학교 통학가능 거리 관련 ····· 55
40.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주체 ····· 56
41. 초·중·고 학생의 교육비 지원과 교육급여의 차이 ····· 57

학생지원

42. 상담일지 작성간 문제점에 대한 보완 요구 ····· 58
43.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관련 ····· 59
44. 유치원 영양사 배치 관련 규정 ····· 60
45. 「학교급식법」 적용 유치원 관련 ····· 61
46. 전처리 농산물 해당 여부 ····· 62
47. 올바른 성가치관 교육 관련 ····· 63
48.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 방법 등 ····· 64
49. 초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가능 여부 문의 ····· 65

전화민원

50. 고졸 학력 취득 검정고시 응시자격 여부 ····· 67
51.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관련 ····· 68
52. 특성화고교 학생의 방송통신고교로의 전입학 가능여부 ····· 69
53.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 6호 관련 ····· 69
54.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전학 관련 ····· 70
55. 학교급식 식재료의 방사능 허용수치 ····· 71
56. 2021년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검진결과서 발급 횟수 ····· 72

학교제도

57. 능력에 따라 교육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요구 관련 ····· 73
58. 학교 배정 관련 문의 ····· 74
5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의 입학할 학교의 변경 관련 문의 ····· 75

교원 인사·복지

60. 교사의 법적 신분 ····· 76
61. 교원의 국적 상실 ····· 77
62. 특수교사가 교과교사인지 여부 ····· 77

CONTENTS

63. 교육공무원 임용 시 신원조사 ····· 78
64. 교육공무원의 동반휴직과 육아휴직 관련 ····· 79
65. 교육공무원의 연수휴직 관련 ····· 80
66. 교육공무원의 고용휴직 관련 ····· 81
67. 육아휴직 중 겸직 및 대학원수강 관련 ····· 82
68. 교원의 연가저축 관련 ····· 83
69. 정년퇴직교원의 기간제교장 임용가능 여부 ····· 84
70. 기간제교원의 연가일수 ····· 86
71. 산학겸임교사 등 강사 범위 관련 ····· 87
72. 초·중등학교 교사의 인사교류 관련 ····· 88
73. 교원의 징계 관련 ····· 88
74. 아동학대로 수사개시 통보된 교사와 피해학생 분리 여부 ····· 89
75. 교사 결격사유 관련 ····· 89
76. 사범대학으로의 전과 자격 요건 ····· 90
77. 교원양성기관 학점인정, 입학조건 문의 ····· 91

전화민원

78. 교장공모제 관련 ····· 92
79. 원로교사 수당 교육경력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 포함 여부 ····· 93
80. 원로교사 수당 지급일 관련 ····· 94
81. 초·중고교 교원 신규 임용 시 성비할당제 유무 ····· 94
82. '아빠의 달'수당 시행지침 관련 ····· 95
83. 교원의 퇴직준비휴가 폐지 사유 확인 ····· 96
84. 교원의 상피제 도입 여부 ····· 97
85. 호봉획정을 위한 교육경력 인정 관련 ····· 98

교원자격

86. 1급 정교사 자격 마약검사 관련 ····· 99

87. 강사 경력을 통한 교육실습 면제 여부 ····· 101
88. 중등학교정교사 2급 자격기준 관련 ····· 102
89. 초등교사 자격기준 전공학점 관련 ····· 104
90. 전문상담교사 2급의 자격기준관련 문의 ····· 105

전화민원

91. 학교현장실습 가능기관 ····· 106
92. 교육봉사활동 운영기관 인정 여부 ····· 107
93. 교육봉사활동이 이행되는 시간 관련 ····· 107
94. 교육대학원 입학 전 학점은행제 전공과목 인정 관련 ····· 108
95. 교원자격 취득 시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 관련 ····· 109
96. 교원자격 무시험검정기준 중 성인지 교육 관련 ····· 110
97. 시간제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의 인정 여부 ····· 111
98.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 의견/만족도 조사 내용 수정 가능여부 ····· 111
99.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시 본인확인번호 관련 ····· 112
100.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 수정 가능여부 ····· 112
101.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 관련 ····· 113
102.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 시 본인확인 관련 ····· 113
103.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 시 익명성 보장 관련 ····· 114
104.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관련 ····· 115
105. 교직과목 이수 면제 여부 ····· 116

Ⅲ 교육안전정보

학생안전

1.「학교안전법」 용어 해석 질의 ····· 119
2. 공제급여 범위 ····· 120

CONTENTS

3. 공제급여 신청방법 ····· 120
4. 학생안전교육 의무 실시 ····· 121

전화민원

5. 대학의 안전사고 보험(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관련 ····· 122
6. '아이알리미 앱'의 교육부 예산 지원 여부 ····· 123

교육정보

7. 홍보자료 내 수정 요구 ····· 124
8. 비대면 강의 시 화면 녹화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문의 ····· 125

전화민원

9. 휴대폰 미소지 학생의 나이스 학생서비스 이용 관련 ····· 127
10. 기숙사 설치 중학교 현황 ····· 128

교육시설

11. 석면 실내공기중 석면농도측정 기준에 관한 질의 ····· 129
12.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집기류 이동 관련 ····· 130
13. 교육시설 외부 치장벽돌 보수·보강 안내서 관련 ····· 131

Ⅳ 고등교육

대학 학사·제도

1. 코로나19 관련으로 2021년 2학기 대면 수업 반대 ····· 135
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시행령」의 신속한 공포 관련 ····· 137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학력인정) 제2항 의미 ····· 138

4. 폐교대학 제증명서 발급 관련 질의 ····· 139
5. 국내 의대 석사과정 입학 또는 의대 학사편입 가능여부 질의 ····· 139
6. 대학 졸업 이수학점이 차이나는 이유 ····· 140
7. 「고등교육법」에서 대학생의 범위 관련 ····· 140
8. 교사에 대한 학술논문 무료 이용 지원 ····· 141
9. 비대면 수업 운영에 따른 대학 등록금 반환 ····· 142
10. 대학 자퇴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기준 관련 ····· 143
11. 등록금 반환 청구 소멸시효 관련 ····· 144
12. 대학별 첨단학과 신설로 인한 편입 관련 문의 ····· 145
13. 대학정원조정 관련 ····· 146
14. 모집단위가 없는 연계·융합학과 설치에 관한 질의 ····· 146
15. 대학교육 경비 고지 및 납입 관련 ····· 147
16. 대학 자퇴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금액 문의 ····· 148
17. 대학교 현장실습 실습생 수당 회계처리 문의 ····· 149
18. 현장실습 학점인정 여부 관련 문의 ····· 150
19. 유치원 원장 계약학과 입학자격 관련 ····· 151
20. 현장실습생의 유급 휴일 관련 ····· 152
21.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관련 ····· 153
22. 대학 개방형이사 연임 ····· 153
23.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 ····· 154
24. 대학직원의 겸임교수, 시간강사 가능여부 ····· 154

전화민원

25. 지역인재 선발 관련 ····· 155
26. 재수생의 지방 의대 지역인재 선발 관련 ····· 156
27. 검정고시자의 지방 의대 지역인재 선발 자격 여부 ····· 157
28. 출신 학교와 권역이 다른 지역 의대 지역인재선발 자격 ····· 158
29. 대학 설립·운영 규정 별표2의 세부 부속 시설의 종류 ····· 158
30. 조기취업자의 학교 시험(중간고사, 기말고사) 관련 ····· 159

CONTENTS

31.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소득 분위 관련 ····· 160
32. 대학 폐교 시 특별편입학 관련 ····· 161
33. 2022년 확대 시행 예정 셋째자녀(다자녀) 국가장학금 관련 ····· 161
34. 셋째아 이상 대학 국가장학금, 자녀 수 관련 ····· 162
35. 재교육형 계약학과 합격자의 정시모집 지원 가능 여부 ····· 162
36. 재교육형 계약학과 입학자격 관련 ····· 163
37. 대학생 현장실습 실습지원비 관련 ····· 164
38. 제주도 내 대학교의 대학인가 관련 ····· 165
39. 폐교된 기능대학교(폴리텍대학교)의 교육제증명 발급 ····· 166
40. 전문대학 부설학교 개설 가능 여부 ····· 167
41. 전문대학 전과 관련 ····· 168
42. 전문대 4년제 간호학과 졸업 시 대학원 진학 가능 여부 ····· 168
43. 산업체 위탁교육, 산업체 재직증명 관련 ····· 169

대학 인사·복무

44.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복수의 석사학위 경력인정 관련 질의 ····· 170
45. 「사립학교법 시행령」상 교원징계위원회 운영 관련 ····· 171
46. 국립대학 교육공무원 조교의 복무 관련 질의 ····· 172
47. 전공대학 졸업 이후, 대학 출강(강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 173
48. 국립대학에서 임용한 강사를 교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173
49. 대학 강사 임용 시기에 대한 문의 ····· 174
50. 「고등교육법(강사법)」에 따른 과목 배정에 대한 문의 ····· 175

전화민원

51. 대학 강사의 퇴직금 관련 ····· 176

대입제도 전화민원

52. 재직자 특별전형 관련 ····· 177

V 평생교육

평생교육

1. 독서실 교습비 반환기준 관련 질의 ····· 181
2. 학원 교습비 반환 합의 적법 여부 ····· 182
3. 학원과 유해업소의 거리 제한 관련 질의 ····· 182
4. 국립대 강사 학원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문의 ····· 183
5. 보습학원 유아대상 교습과정 운영 가능 여부 질의 ····· 183
6. 학원의 등록가능한 교습과정 질의 ····· 184
7. 교습소 교습자 변경 관련 근거 ····· 185
8. 학원 강사등록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 185
9. 학원 미사용 시간에 공간 임대 활용 가능 여부 질의 ····· 186

전화민원

10. 학교 밖 청소년의 EBS교재 무상지원 대상 여부 ····· 187
11. 지식샘터에서 강의 시 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 188
12.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대상에 외국인도 포함하는지 여부 ····· 188
13.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 관련 ····· 189
14.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관련 ····· 190

직업교육 전화민원

15.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 수당 관련 ····· 191
16. 직업계 고교 현장실습 수당액(금액) 근거 관련 ····· 192
17.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참여하는 학습기업 증명 관련 ····· 193

CONTENTS

Ⅵ 기 타

기 타

1. 교원의 외부 강의 시 사례금 상한액 관련 ····· 197
2. 외부 강의 신고 관련 ····· 198
3. 대학의 학적 보존 기간 ····· 199
4. 재외한국학교 졸업자의 학생부 등 교육제증명 발급 관련 ····· 199
5.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반, 한글학교 개설 현황 ····· 200

Ⅶ 민원처리 관련 법령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민원처리법) ····· 203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민원처리법 시행령) ····· 217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민원처리법 시행규칙) ····· 236
4. 「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 239
5. 「적극행정 운영규정」 ····· 245

2021년도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I

유아·특수교육

유아교육

1 등원 제한 시 유아 학습권 보호 요청

질의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 등원 제한 시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구분 없이, 유아 학습권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회신 2020-07-28(유아교육정책과)

- 교육부는 방역당국(질변관리본부 등)과 협의를 통해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원격수업 시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방과 후 과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손 및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유아 등의 돌봄 공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하고 학부모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EBS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송출, 누리과정 포털(i-nuri) 운영, 놀이꾸러미 배부 등을 통해 내실있는 원격수업 운영 및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 ‘처음학교로’ 유치원 입학지원

질 의 유치원은 보육이 아닌 교육의 개념이 강하므로 다자녀, 차상위 등에 경제적 지원이 아닌 유치원 입학을 위해 지원하는 우선모집선발 혜택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나요?

회 신 2020-12-02(유아교육정책과)

- 「교육기본법」 제18조(의무교육)에서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상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에 대한 모집 선발권은 「유아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유치원 원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 다만, 시도교육청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 공통적으로 배려 받을 필요가 있는 법정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유아에게는 유아교육 기회보장 차원에서 국공립유치원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다자녀 등 우선 모집 대상은 각 시도교육청과 유치원의 여건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교육부에서는 학부모의 유치원 수요에 부응하고자 국공립유치원 학급수 등 확충을 통해 취원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처음학교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유치원 입학관련 공정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더욱 고민하면서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유치원 CCTV 설치 관련 문의

질 의 유치원 CCTV 설치를 의무화 할 수 있나요?

회 신 2020-11-30(유아교육정책과)

- 교육부는 「유치원의 CCTV 설치 확대」 사업을 통해 유치원 CCTV 설치를 지원하였고, 유치원 CCTV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업무처리를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작·안내하였습니다. 현재 유치원 교실 내 유아의 아동학대·안전사고 예방 및 확인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자 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설치가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4 '처음학교로' 선발방법 문의

질 의 2021학년도 처음학교로 일반모집 선발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 신 2020-11-03(유아교육정책과)

- 2021학년도 '처음학교로' 일반모집 선발방법, '희망순 선발(중복선발제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위희망자 선발시 유치원 모집정원이 모두 선발될 경우, 하위희망자(상위희망 유치원에서 미선발된 자)에게는 추첨에 따라 '대기번호'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1희망 유치원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학부모님께서 3개 유치원에 모두 지원했을 경우
  ① (1희망 유치원에 선발된 경우) 2/3희망 유치원은 추첨에서 제외됩니다.
  ② (1희망 탈락, 2희망 유치원에 선발된 경우) 1희망 유치원은 '대기번호'가 부여, 3희망 유치원은 추첨에서 제외됩니다.
  ③ (1/2 희망 탈락, 3희망 유치원에 선발된 경우) 1/2희망 유치원은 '대기번호'가 부여됩니다.

5 사립유치원 처우개선

질 의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이 되어야 유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회 신 2021-10-18(유아교육정책과)

-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11년부터 처우개선비와 담임수당을 지급해오고 있고, '19년부터 공·사립 교원 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기본급 보조금과 더불어 장기근속 수당 3만원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공·사립 교원 간 임금 격차 완화와 사립유치원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금을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금은 교육지원청에 임용 보고된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매월 재직한 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익월 15일에 해당 교원 명의 계좌로 직접 계좌이체 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며, 기본급 보조비 지급을 이유로 기존 보수를 감액하거나 임금을 동결하는 등으로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될 경우 지원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되는 방법 등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점검반을 구성하여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교원 급여 관리에 관한 사항(급여대장 비치, 월별 급여 대장 작성 여부, 급여 관련 지출결의서 및 이체확인증 등)을 점검하고 기본급 보조비 부정수급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과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집행실적 등을 반기별(상·하반기)로 교육부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신설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원의 '육아휴직' 시 신분 및 처우를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지원('22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지위에 맞는 처우는 곧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로 이어질 것임에 유의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 교원 근무여건이 개선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 문의

질 의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이 무엇입니까?

회 신 2020-08-28(유아교육정책과)

- 유치원은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이며 유치원 교원 자격 취득과 관리는 초중등교원과 동일한 「교원자격검정령」 등 관계법령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또한, 유·초중등 정교사2급(무시험 검정 기준) 취득을 위한 합격기준이 50학점 이상의 전공과목, 22학점 이상의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일정 점수 이상의 성적 기준 등을 충족 시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 하시는 유치원 교원의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위상 제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는 바이며, 교육부는 유치원이 학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를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유치원 위상 제고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유치원 예비교원 양성 시 교육기관(대학)의 수업 연한 순증 의견 등과 관련하여 그간 제도의 발전 경과 검토 및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해되어 향후 관련 논의 시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의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소중히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교육부가 되겠습니다.

전화민원

7 유치원 급·간식 운영관리지침서

질의 2017년에 제작된 「유치원 급·간식 운영관리 지침서」 이후 개정된 내용의 지침서가 있는지?

회신 2021년 전화문의(유아교육정책과)

- 2017년 이후 제작된 「유치원 급·간식 운영관리 지침서」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 '학교급식 정보마당' 사이트(www.sfic.go.kr)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사이트에서 학교급식 자료 → 급식 위생·안전 목록에서 2021.03.04.에 등록된 '[교육부·교보원] 유치원 급식 안내서(운영·영양관리, 위생관리)(2021)'라는 제목을 클릭하면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2020년 유치원급식 운영·위생관리 안내서 개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유치원급식 운영영양관리 안내서」와 「유치원급식 위생안내서」를 다운받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8 유치원 원감 공석 가능 여부

질의 본 유치원은 사립으로, 연령별로는 2개 학급 총 6개 학급을 운영 중입니다. 기존에는 원장님, 원감님이 따로 계셨었는데 올해부터는 원감님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원감의 업무가 교원들에게 주어지고 교원의 업무가 많아지면서 학부모들 사이에 교원들이 아이들에게 신경을 덜 쓰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치원이 원감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21년 전화문의(유아교육정책과)

-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2학급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원(원감)을 배치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원(원감) 배치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준용하나 유치원의 설립자가 결정합니다.

9 교육과정 운영시간 중 귀가 가능 여부

질의 자녀가 유치원생으로 학원을 다녀야 하는데 학원이 유치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 오후 1시 30분 이전에는 유치원에서 나와야 할 것 같아 유치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병원을 가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육 과정에 포함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후 1시 30분 이전에는 귀가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유치원의 안내가 맞는 것인지요?

회신 2021년 전화문의(유아교육정책과)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입니다. 예를 들어 초·중·고학생이 3교시까지 수업을 받다가 중간에 학원을 간다고 교육과정 운영 시간 중에 학교를 나가지 않는 것처럼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운영시간이 있어 교육과정 운영시간 중간에 하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 유치원 원아의 출결 알리미 서비스 도입 여부

질의 아이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낼 때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통해 어린이집에 잘 도착했다는 알림을 부모의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이러한 알림서비스를 운영하는 곳도 있고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던데 혹시 교육부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회신 2021년 전화문의(유아교육정책과)

- 아직까지는 유치원에서 선택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부 차원에서도 2023년 정도에는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 중입니다.

11 국립대학 부설 유치원 현황

질의 국립대학교 부설의 유치원이 있나요? 어떤 유치원들이 있나요?

회신 2021년 전화문의(유아교육정책과)

- 강릉원주대학교부설유치원(강원), 한국교원대학교부설유치원(충남),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유치원(충남) 총 3개의 국립대학 부설 유치원이 있습니다.

12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참여 서비스 관련

질의 유치원 교원평가를 하려고 해당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곳이 있는데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건가요? 회원가입을 하는 곳은 보이지 않습니다.

회신 2021년 전화문의(유아교육정책과)

-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참여 서비스 이용 시 유치원에서 원아별로 개별 발급하여 부여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르고 계시다면 자녀가 재원 중인 유치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유치원 원아의 전·편입학 관련

질의 다니던 A유치원을 어제 퇴원하고 오늘 B유치원으로 입학을 하게 될 경우 '편입학'이라고 하는지 '전학'이라고 하는지? 만약 편입학일 경우 A유치원의 생기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회신 2021년 전화문의(유아교육정책과)

- A 유치원을 퇴원하고 바로 다음 날 B 유치원에 입학을 했다면 전출과 전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학으로 봅니다. A유치원을 퇴원하여 학적을 중단하고, 한 동안 학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집에서 데리고 있다가 다른 유치원에 입학을 하거나 중단 이전 유치원에 재학 당시 연령보다 차상급 연령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를 편입학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니던 유치원을 퇴원하여 다른 유치원으로 학적을 옮길 경우에는 입학하는 유치원으로 생기부를 이송하여야 합니다.

14 거주지 외 타 시·도 유치원 입학 가능 여부

질의 4세 유아를 둔 학부모로 내년에 유치원을 보내려고 하는데 거주지역에 있는 유치원에만 입학을 해야 하나요? 거주지 인근 타 시·도 소재 유치원으로도 입학이 가능한가요?

회신 2021년 전화문의(유아교육정책과)

- 유치원은 초등학교처럼 교육장이 통학구역을 지정하지 않으며 중학교나 고등학교처럼 교육청에서 유치원을 배정하지 않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취학 대상 유아는 거주지가 속한 권역 밖에 있는 유치원에 취학할 수 있는바 타 시·도 등 인접 지역 소재 유치원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15 처음학교로 이용 시 사전접수와 본접수의 차이

질의 처음학교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사접접수가 있고 본 접수가 있던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요?

회신 2021년 전화문의(유아교육정책과)

- 내용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접수 기간에 병원 입원, 출장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학부모들을 위해 지정된 날짜에 미리 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6 다자녀에 태아 포함 여부

질의 유치원 우선모집에 다자녀 가정이 있던데, 현재 임신 중이고 이번 달 말에 출산을 합니다. 우선모집 기간이 지나고 난 뒤 출산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다자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회신 2021년 전화문의(유아교육정책과)

-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우선모집 4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유치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태아를 유아로 인정하여 다자녀로 볼지는 교육청 또는 유치원 장의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유치원이나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처음학교로'에서 3지망 모두 동일 유치원 지원 가능 여부

질의 처음학교로에서 1~3 희망 지원을 모두 동일한 유치원으로 입력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회신 2021년 전화문의(유아교육정책과)

- 1~3 희망 지원을 모두 동일한 유치원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각각 다른 유치원으로 선택하여 지원하셔야 합니다. 2지망에서 '유치원 찾기'를 했을 때 이미 1지망에서 신청한 유치원은 제외된 유치원들로 나오게 됩니다. 3지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수교육

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관련 질의사항

질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시도교육청도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21-06-14(특수교육정책과)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자치법) 제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시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 교육연수기관 해당 여부 질의

질 의

1. 국립특수교육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의 제2호가목9)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해당합니까? 해당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2.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교육연구사)에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가목9)에 해당하는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회 신

2021-10-13(국립특수교육원)

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근거하여 교육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며, 그 업무(제23조)로는 '특수교육에 관한 실험·연구', '학습자료의 개발·보급', '특수교육담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무',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무'가 있으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수교육'에 대한 연구 등을 위한 기관으로서 부수적인 교원 등에 대한 연수 기능을 겸한 기관입니다.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가목9)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의 복무 등 질의

질 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특수교육 교원의 신분은 어떻게 되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회 신 2020-10-21(특수교육정책과)

- 먼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제2호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의거하여 국가공무원에 해당됩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는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지난 교육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등 교원의 자기 연찬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교육행정기관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사용 대상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 더불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는 전문인력은 특수교육교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특수교육전문직,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관련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치료사, 상담사, 복지사 등의 다양한 전문인력이 배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도 복무에 관하여는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이에 소속기관의 명령에 따라 상황실 및 당직근무 등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전화민원

21 장애이해 교육과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적 상호 인정

질의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부는 장애이해 교육을, 여성가족부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이해 교육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으로 실적이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반대의 경우인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 장애이해 교육으로 그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21년 전화문의(특수교육정책과)

- 보건복지부의 소관법률인「장애인복지법」제25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어린이집, 각 급 학교(유치원, 대학교, 대학원 포함)의 소속직원, 및 교사, 학생은 의무적으로 연 1회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는 정책적으로 연 2회 의무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도록 보다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단, 각급학교,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산하기관 직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연1회 이상 의무 실시(「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특수교육법」제21조(통합교육),「초·중등교육법」제59조(통합교육), 제5차 특수교육발전 계획, 특수교육운영계획

- 또한, 장애이해 교육을 받은 것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받은 것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받은 것은 장애이해교육을 받은 것으로 그 실적은 상호 인정됩니다.

2021년도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Ⅱ

초·중등교육

교육과정

1 생명존중 및 동물보호 교육 강화

질의 생명존중 및 동물보호 교육을 강화해 주세요.

회신 2021-06-25(교육과정정책과)

- 초등학교 도덕, 과학, 실과 등, 중학교 도덕, 사회 등, 고등학교 국어, 환경, 과학탐구 실험 등 다양한 과목에서 인간과 동물의 상호관계, 생명의 소중함, 동물의 활용 및 기르는 과정 등을 반영하여 생명존중,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내용을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 특히, 범교과 학습주제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의 '동물보호 및 복지'에서 '인간과 동물의 조화', '동물보호를 위한 직업 탐색', '동물 복지를 위한 노력'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 기초 교양 교육 강화

질의 금융·법·성교육 및 공동체의식, 리더십, 소통, 역할 등 기초 교양 교육을 강화해 주세요.

회신 2021-07-12(교육과정정책과)

- 초등학교 사회에서 희소성, 생산, 소비, 가계, 기업, 합리적 선택 등, 중학교 사회에서 자산관리, 신용관리, 물가상승, 실업 등, 고등학교 경제에서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시장과 경제활동, 국가와 경제활동, 세계 시장과 교역 등을 반영하여 금융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초등학교 사회, 도덕 등, 중·고등학교 사회, 통합사회 등에서 헌법의 기본원리,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 기본권 보장 내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통합사회, 정치와 법, 법과 정치 등에서는 헌법 이외에도 민법의 기본원리, 형법의 의의와 형사 절차의 이해, 사회법, 근로자의 권리와 법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초등학교 통합교과, 사회, 도덕, 실과 등, 중학교 도덕, 사회, 기술·가정, 보건 등, 고등학교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기술·가정 등에 성과 사랑의 의미, 이성 친구에 대한 예절, 남녀의 성적 발달 변화, 남녀 성의식 차이, 임신·출산·피임의 원리와 방법 등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성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핵심역량에 반영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존중하며, 공동체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범교과 학습주제의 안전·건강교육,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에 폭력 예방 및 신변보호, 성교육, 우월적 지위 남용 예방교육, 생명존중 의식교육, 헌법정신 및 법질서 존중 등도 반영하여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서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향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학교에서 수학적 개념 학습 강화

질 의 학교에서 수학적 개념 학습을 강화해 주세요.

회 신 2021-07-20(교육과정정책과)

-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한 수학적 표현 및 문제 해결 능력 함양 등을 위해 기본이 되는 수학적 개념 학습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전략을 탐색하며 해결 과정을 실행한 뒤, 검증 및 반성하는 단계를 거쳐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확산 등 여러 여건에 의해 수학 수업에서도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중심 수업 등 다양한 유형의 원격수업을 함께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학생들의 수학 기초학력 보장 및 수학 학습 과정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향후, 교육부는 학교에서의 수학 학습 부담은 줄이며, 수학적 개념 학습에서부터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이르기까지 의미 있는 수학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초등 저학년 한글·수학교육 관련 문의

질 의 초등학교 저학년 한글과 수학의 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습니까?

회 신 2020-10-12(교육과정정책과)

-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이 ㄱㄴㄷ 등 한글의 기초부터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기존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에 27차시 정도 하던 한글교육 시간을 62차시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는 등 입학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초등 1~2학년을 비롯한 초등학교 수학 전반에 걸쳐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교육과정에 '평가 상의 유의사항'을 제시하는 등 기초·기본 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초등 1~2학년에 있어서 충분한 한글교육을 제공하고, 기초적인 수리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습자 수준에 맞춘 학습과 학생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 학생평가 방식 관련 건의

질의 학생평가 방식(4지선다형)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개선요청
(한국교육이 아직까지도 4지선다형 고르기 식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과거 교육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회신 2021-04-30(교수학습평가과)

- 교육부는 학생 참여형 수업과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과정중심 평가를 강화하는 등 객관식 시험만이 아닌 서·논술형 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식을 통한 종합적인 평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수학습의 방향은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학습 집단을 구성하여 학생 맞춤형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따른 평가의 방향은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평가하여 모든 학생이 교육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에 대한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학생 맞춤형 수업과 평가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현행 교육과정의 방향성 및 취지에 따라,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교육체계가 되지 않도록, 교수학습과 평가가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학생들이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현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6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학생평가

질 의 자가격리자 발생 시 중고등학교 학생평가 방법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등교중지 대상학생이 되는 경우 학생들의 평가 방법 및 인정점 부여에 대한 질의)

회 신 2021-04-28(교수학습평가과)

-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 등과 함께 마련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르면,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동거인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고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를 근거로 마련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에서는 등교중지 대상 학생에 대해 출석인정을 하고, 평가에 있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지침과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100% 인정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감염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건의해 주신 내용과 더불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귀국학생의 재취학 구비서류

질의 현재 아랍에미리트에 거주하고 있고 올 하반기 귀국예정입니다. 국내학교 재취학을 위한 구비서류가 궁금합니다.

회신 2021-03-12(교수학습평가과)

-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 일부발췌 p45~)**
> 가) 제출 서류
> (1)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
> (2) 성적증명서
> (3) 국내 이전 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 (4) 출입국사실증명서
> (5)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의 '해외 전입 학생 예방접종관리' 참고
> (7) **기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 서류(반드시 관할교육청의 서류 확인 필요)**
> 나) 학년 배정 방법
> (1)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 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한다.

- 상기 내용을 근거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별도의 전·편입 규정에 따라 귀국학생의 재 취학 처리를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재 취학 예정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부 발급 관련

질의 대입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학년도 종료이전에는 전체 학생부 발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신 2021-07-27(교수학습평가과)

-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p.31에 따르면 재학생(휴학) 및 학업중단 학생(자퇴·퇴학·제적)에 대해 학생/학부모서비스나 교육정보시스템의 [민원] 메뉴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제공 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재학생: 당해 학년도. 학업중단학생: 학업중단 발생 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이는 마감 전에 학생부 내용을 확인한 일부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과도한 학생부 수정 요구가 발생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며, 졸업예정 학생의 경우 학생부 대입전형자료 생성 마감일 이후부터 온라인 자료제공 기간 동안 대입제공용 학생부 자료 발급이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9 초·중·고 등교 일수 확대

질 의 교육부의 거리두기 지침을 조정하여 등교일수 확대가 가능한가요?

회 신 2021-03-29(교수학습평가과)

-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밀집도 원칙을 조정하였으며, 유아 및 초등 저학년을 비롯하여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의 밀집도 원칙 적용 여부의 자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아울러,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통해 등교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탄력적 학사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통한 시도의 컨설팅을 통해 등교 인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또한, 원격수업 인프라 안정화, 실시간 쌍방향 소통 확대 권장, 원격수업 교원 전문성 강화 연수 등을 통해 원격수업에서도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다만, 단위학교의 학사 및 수업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교과 교사의 재량에 따라 운영되는 부분이라는 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10 수학여행, 학생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의 교육과정 해당 여부

질의 수학여행, 학생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이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해당한가요?

회신 2020-12-22(교수학습평가과)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제2항에 따르면,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법적 근거입니다.
- 또한,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수학여행, 학생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 등의 교육활동은 운영 단위가 학년 또는 학습 단위로,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학년(군)별로 배당된 시수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학교교육과정 내의 교육활동에 해당합니다.
-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및 국가 수준 교육과정,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 학교 실정에 적합한 학교 교육과정 연간 운영 계획 및 학사 일정을 수립할 때 수학여행, 학생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의 교육활동을 포함하여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11 주입식 교육에 대한 교육방식

질 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참여형 수업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부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회 신 2021-05-07(교수학습평가과)

- 교육부에서는 2015 교육과정을 통해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 참여 중심의 다양한 수업 방식 적용을 통해 교실 수업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는 등 학생의 적성·희망·진로를 고려한 교수·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수업 개선 관련 연수, 학생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수업 사례 발굴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생의 학습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의미 있는 학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① 이수 과목 수의 적정규모 편성, ② 학생의 발달수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한 자율적인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영 등을 학교 현장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중심 평가 활성화를 통해서도 학습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2 가정학습의 현실과 교육부의 대처 방안

질 의 가정체험학습 사용을 학교장 재량이 아닌 교육부에서 명령으로 변경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일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요?

회 신 2021-09-15(교수학습평가과)

-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격차 문제를 비롯하여 학생들의 심리·정서, 신체 건강, 사회성 결손 등의 문제에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면등교를 목표로 등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를 우려하시는 학생·학부모님을 위해 「학교생활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65호) 제8조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로 가정학습을 추가 하였습니다.
- 즉, 기본적으로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등교·원격 수업을 듣는 것이 원칙이나, 등교 수업에서 생길 수 있는 방역 상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아울러, 교외체험학습의 세부적인 승인 및 운영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에 따라 학교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여건에 차이가 있어 가정학습에 대한 지침을 통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13 영재학교, 과학고 등 개선방안

질 의 영재학교, 과학고 전형시기 일원화 및 영재학교 의대 진학자 제재 방안 도입 등

회 신 2021-12-07(고교교육혁신과)

- 교육부는 영재학교·과학고의 과도한 입학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심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1.17.(화),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영재학교·과학고 전형시기 일원화 도입은 이번 입학전형 개선안을 통한 영재학교 중복지원 금지, 영재학교 및 전형 기간 단축 시행 후 전형 운영 상황 등을 분석하여 제도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영재학교·과학고는 졸업생의 대다수가 이공계에 진학하는 등 학교 설립취지에 따라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공계열 진학 확대를 위해 학교간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을 공유하고, 시도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의·약학 계열 진학비율이 높은 학교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4 영재학교 신입생 선발전형 응시 문의

질 의 2022학년도 영재학교 신입생 선발전형에서의 확진자, 자가격리자 응시 허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 신 2021-06-23(고교교육혁신과)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영재학교는 2022학년도 영재학교 신입생 선발 전형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응시를 허용하기로 결정('21.5) 하고, 방역당국 및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한 전형 시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준비 중입니다.
-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응시를 위한 사전 신청 일정, 제출 서류, 유의 사항 등은 각 영재학교 누리집을 통해 상세히 안내될 예정입니다.

15 자유학기제 운영의 자율성 강화

질 의 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회 신 2021-07-22(교육과정정책과)

- 자유학기의 활동 영역(4개)은 자유학기 운영 학기에 해당 영역의 학생 활동을 통해 학생의 꿈끼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간을 확보하여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학기 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영역 중복 및 교육과정 편성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실제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교원의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중학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하여 자유학기 및 창의적 체험활동 개선 방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 토의식 교원 연수 및 정책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숙의 토론 및 합의의 과정을 거쳐 보다 나은 중학교 교육과정 및 자유학기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 언어 관련 내용의 국어교과 반영

질 의 언어 관련 내용의 국어교과 반영 시기에 대한 질의

회 신 2021-02-09(교육과정정책과)

- 국어 교과에 번역투, 중의문, 언어순화 등의 내용이 언제부터 제시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해당 내용은 국어 교과 가운데 언어(또는 문법) 영역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 및 성취기준에서 세부적으로 해당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문장의 구조, 맞춤법의 원리, 문법요소의 특성, 올바른 언어 사용 등을 가르쳐야 할 내용요소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교과서에서 제시하거나 교사가 각종 학습자료를 활용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언어순화와 관련된 내용은 제2차 교육과정(1963년)부터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어의 문제에 끼친 외국어의 영향(번역투 관련) 및 문장구조(중의문 관련)에 대한 내용은 제2차 교육과정(1963년)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부터 교과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7 자유학년제 중학생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문의

질 의 자유학년제 중학생을 위한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나요?

회 신 2021-01-19(교육과정정책과)

- 자유학기제는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해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강화하며,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자유학기를 두 학기(중학교 1학년 1,2학기) 동안 확대 운영하는 경우를 '자유학년제'라 합니다. 이에 따라 자유학기 활동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를 활용하여 편성 운영하며,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별도의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의무교육기간에 해당되는 중학교 학생이 해외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교육부 훈령에 따라 유예 또는 면제로 학적 처리됩니다.

18 자유학기 활동의 주제선택 활동 편성

질 의 자유학기 활동의 주제선택 활동 편성 시 다른 학년에 편성된 교과 시간을 활용할 수 있나요? 또한, '정보'와 '진로와 직업' 과목의 시수를 조정하여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회 신 2021-01-11(교육과정정책과)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 따라 자유학기에는 해당 학기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자유학기의 취지에 부합하게 편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학기(학년)로 지정된 해당 학기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하여 자유학기 활동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 「자유학기(학년) 및 연계학기 운영 참고자료」에서는 '정보' 과목은 가급적 자유학기 활동으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편제 및 시간 배당 기준에 따라 '정보' 과목은 34시간을 기준으로 편성·운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 시수(34시간)를 확보하여 내실 있는 수업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진로와 직접'은 자유학기의 핵심적인 활동인 진로 탐색 활동과 관련된 선택 교과로 이러한 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가급적 시수 조정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 서울과학고 졸업요건(학점 이수 단위) 관련 질의

질 의 서울과학고 졸업 요건(학점 이수 단위) 관련 질의 민원

회 신 2021-07-19(고교교육혁신과)

- 고교학점제는 2025년 전면시행 예정으로 학점제 도입 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졸업이수 기준은 3년간 192학점입니다.
-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설립 운영 중인 학교로, 「영재교육진흥법」 제13조,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 등에 따라 학교의 교육 영역, 목적 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서울과학고는 영재학교로 지정·전환 시 교육과정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인가와 교육부 지정 승인을 통해 학점제 기반의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서울과학고는 2021학년도 기준으로 교과활동 154학점, 연구활동 26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210시간*(단체활동 120시간, 봉사활동 90시간)을 이수한 자에 대해 졸업 요건을 부여하고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학점으로 산정 시 약 13학점(210시간/16시간 = 13.125학점)

20 고교학점제 보충이수에 대한 궁금증

질 의 고교학점제 보충이수에 대한 궁금증과 그 외의 궁금증

회 신 2021-05-18(고교교육혁신과)

- 2025학년도 전면 적용되는 고교학점제에서는 '미이수'가 도입됩니다. '보충이수'란 미이수가 발생할 경우 과목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별도 과제를 수행하거나 보충 과정을 거쳐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보충이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미이수로 처리되고, 보충이수에 참여하였다면 이수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 미이수 학생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법령상 학년의 진급 요건은 현행 방식을 유지할 예정이기 때문에 보충이수를 완료하지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음 학년 진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 학교 여건에 따라 학칙으로 학년당 최소 이수학점 등 별도의 진급 요건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진급을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확인하여 충족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 평가 횟수나 수업 진도는 각 과목의 교육과정과 학교, 교과 특성을 감안하여 학교 내 교과 협의회나 학년협의회에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학교 학업성적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수립됩니다.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당 계획은 정보공시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전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진도, 평가 계획에 관해서는 사전 공시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정규교육과정 이외 평가에 관해서는 「교육부 훈령(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통해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전화민원

21 자율고등학교(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관련

질의 얼마전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고등학교 구분) 제4호에 자율학교가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2020. 2. 28.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삭제되었다면 이제 자율형 사립고는 사라진다는 것인가요? 현재 자율형 사립고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신 2021년 전화문의(학교정책과)

- 외국어·국제계열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외국어·국제계열의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자율형 사립·공립고등학교는 교육 과정의 자율적인 운영을 통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각각 도입되었으나 본래 도입된 취지와 달리 고등학교의 서열화를 유발하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의 설립근거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하도록 하는 한편,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폐지하여 학생 선발에 관한 제도를 정상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2020. 2. 2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2020. 2. 28.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2025. 3. 1.부터 시행을 하여 2025학년도의 학생 선발부터 적용하며 재학 중인 2학년 및 3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특수목적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22 마이스터고교 합격 후 일반고 지원가능 여부

질의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합격한 후에는 일반계고등학교를 지원할 수 없는데,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합격한 것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일반계고등학교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회신 2021년 전화문의(학교정책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전기학교인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선발된 자는 후기학교인 일반계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합격을 하면 합격한 것을 포기하더라도 일반계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23 4월 학기제가 3월 학기제로 변경된 시기 관련

질의 1960년 3월에 OO상업고교를 졸업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같은 해 2월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학교로 물어보니 확인이 안 된다고 하는데 1960년대에는 3월 졸업이 맞는지, 언제부터 2월에 졸업식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21년 전화문의(학교정책과)

- 「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제1학기의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제2학기의 '10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를 '9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으로 1961.11.1.에 일부 개정·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교육부 지정 필수 영어 단어 관련

질의 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시중 서점에서 교육부 권장이라고 하면서 중·고등 필수 영어 어휘와 같은 비슷한 제목들의 서적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교육부가 정한 영어 단어 리스트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신 2021년 전화문의(교육과정정책과)

- 영어 기본 어휘목록은 영어과 교육과정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운영하는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ncic.re.kr) - 교육과정 자료실의 영어과 교육과정 내에서 영어 기본 어휘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5 인공지능(AI) 선도학교 명단 관련

질의 AI콘텐츠 사업 관계자입니다. 인터넷을 보다보니 대전 지역에 14개교의 인공지능(AI) 선도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대전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인공지능(AI) 선도학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회신 2021년 전화문의(교육과정정책과)

- 인공지능(AI) 선도학교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최종 선정합니다. 당초 500개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최종 566개교를 선정하였으며, 선정결과는 21년 2월 교육청으로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선정된 학교의 현황은 SW중심사회(www.software.kr) - SW·AI 정책사업 - 정책사업소개 'AI 선도학교 명단'에서 지역별(17개 시·도), 학교급별(초·중·고·특)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 사이버교과서 박물관 관련

질 의 예전에는 오래전 교과서의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교과서사이트가 있어서 이용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해당 사이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회 신 2021년 전화문의(교과서정책과)

- 예전에는 오래전 교과서의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교과서 사이트가 있어서 이용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해당 사이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이버교과서 박물관은 행정안전부의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던 것으로, 데이터베이스 유지 보수 등의 예산 관련 문제로 2020년 외부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다만, 방문·열람·복사 등의 서비스는 지속하고 있으며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 - 전자도서관'에서 해당 도서의 소장 여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개발원(043-530-9243)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어 '논문' 관련

질의 '논문' 관련해서 본인이 작성한 것은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기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OOOO 연구논문 자료를 읽은 것이 수행평가나 교과수업을 할 때에 도움이 되었다."는 식의 내용으로도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는 건가요?

회신 2021년 전화문의(교수학습평가과)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대학 교재 또는 논문을 활용한 교육활동은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이 되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에 '논문'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28 지각(또는 조퇴, 결과) 3회시 결석처리 여부

질의 최근 아이가 병원에 간다고 지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각을 3번 하면 결석처리 한다고 들은 기억이 있는데 결석으로 처리되는 게 맞나요?

회신 2021년 전화문의(교수학습평가과)

- 「2018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까지는 정근 산정 시 지각(또는 조퇴, 결과)을 3회 하면 결석 1일로 간주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으나 「2019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해당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교내에서 개근상·정근상 수상 대상자의 수상 여부의 판단은 시도교육청 및 학교별 방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각(또는 조퇴, 결과)은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 학년 수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개근 :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임

29 일반고 학생의 부사관 학교 입교 시 출결 처리 관련

질의 아이가 일반고 3학년에 재학 중인데 10월에 육군부사관학교를 입교하게 될 경우에 출결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회신 2021년 전화문의(교수학습평가과)

- 일반고 학생의 부사관학교 입교는 자원입대를 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병역법」 제73조에 따라 휴학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을 위한 출석일수를 충족한 경우에는 '기타결석'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30 재수생(n수생)의 대입전형자료의 수상실적 제공 관련

질의 올해 고3은 대입 시 수상경력을 학기당 1개 이내로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학년도 대입에 지원할 경우 현 고3 재학생처럼 재수생(n수생)도 똑같이 학기당 1개 이내에서 제공되는지? 재수생(n수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지?

회신 2021년 전화문의(교수학습평가과)

-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18.8.) 및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18.8) 등에 따라 학생부 주요항목 내 비교과 영역(요소) 개선을 위해 2022학년도 대입부터 교내 수상경력은 학기당 1건만 반영하도록 제도가 변화하였습니다. 이는 졸업생에게도 적용을 하며 원서접수 기간 중 대학별 원서접수를 하는 단계에서 직접 수상실적을 입력하고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졸업생은 학생부 수상실적란에 별도의 학기 구분이 없는데, 이때 학기당 1건 이내의 수상실적은 수상 연월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대회 개최일(또는 수상사유 발생일)과 수상 연월일의 학기가 상이할 경우 대회 개최일(수상사유 발생일) 학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

31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관련

질의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 신청 자격을 교육비지원대상자까지 확대 요청**

- 해당 학생은 교육비 지급 대상자(통상 중위소득 50~60%)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도 성실하고 우수한 학업 성취를 보이고 있어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으로 추천하고 싶으나, 장학생 지원자격이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정 또는 법정 차상위 계층 까지 해당하여 위 학생의 경우 추천이 불가하므로 지원자격 경계에 있는 학생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자격조건 완화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함

회신 2021-04-07(교육복지정책과)

- 우선, 교육 현장 일선에서 교사로서 학생들의 성장 지원을 위한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 및 국가 학자금 지원 정책 집행과 관련한 적극적인 협조와 의견 개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교육 현장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을 살펴보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이 많으며, 이들을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보조가 다소 아쉽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가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장학사업을 위해 배정된 재원 역시 유한**합니다. 이에 지**원 필요성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수혜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음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의 경우 **약 17만 명의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정 중고생 중 약 3% 수준인 5,500명을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즉, 이 또한 **수요자에 비해 많이 부족한 수준**이며, **2020년의 경우 3대1을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국민들께서 주시는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금번에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과 유사한 말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장학사업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장학사업 재원을 추가로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 아울러 귀하께서 신규 장학생으로 추천하고자 하시는 학생이 가계의 긴급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한 SOS장학생으로 신청 가능**한지도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가 장학제도 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관심과 의견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은 향후 제도개선 사항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 초등학교 취학 관련

질 의

- 초등학교 취학시기
- 현재 해외에 거주중이며, 자녀의 취학통지서를 한국 주소지로 받음
- 홈스쿨링을 하다가 아이가 원할 때 초등학교 취학을 하기 위한 방법 문의

회 신 2020-12-15(교육복지정책과)

-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에 따라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에게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에 대해 취학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과태료)에 따라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기관에 취학하여야 하며,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14조(취학의무의 면제 등)**에 따라 질병, 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해서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와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취학의무의 면제·유예)**에 따라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3 고등학교 졸업자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문의

질 의 고등학교 졸업자가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지요?

회 신 2020-06-09(교육기회보장과)

-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도교육청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한복 교복 관련

질의 학생 의견과 관계없이 중고등학교의 교복을 한복으로 정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며, 학생들의 의견이 중요함

회신 2020-10-14(교육복지정책과)

- **교복 착용 여부, 디자인 등 학생복장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따라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며,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 반영·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교육부에서는 교복 등 학생 복장에 대해 일괄적인 지침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각 시도교육청별 **교복 운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교복간소화, 편한 교복 도입, 여학생들의 바지 교복 선택권 권장** 등 **학교에서 교복 선정시 학생들의 활동성과 편의성을 고려**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한복교복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044-203-2559)에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5 미인정 결석 학생관리 관련

질 의

- 미취학, 미인정결석 소재안전 확인업무 처리를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이용 사무명 변경 요청
- 출결용어가 무단결석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사무명 변경을 요청함

회 신 2020-09-24(교육복지정책과)

- 귀하께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의 이용사무명을 현행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인 「교육부 훈령」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등)에 따른 출결용어로 변경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초·중·고 학교 현장 및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미취학 아동, 미인정 결석 학생들의 소재안전 확인과 취학 독려**를 위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용하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의 이용사무명 변경을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민원

36 교육급여 지급대상 관련

질의 아버지는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외국인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했으며 어머니가 데리고 온 자녀는 아직 외국 국적일 경우 교육급여 지급대상이 되는지?

회신 2021년 전화문의(교육복지정책과)

- 학생 본인이 외국인일 경우 교육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7 초등학교 조기입학 가능 여부

질의 아이가 2016년 2월생으로, 옛날에는 빠른 2월생들이 전해에 초등학교를 입학하여 다닐 수 있었는데 요즘에도 빠른 2월생들이 학교를 일찍 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21년 전화문의(교육복지정책과)

- 2022학년도 의무취학 대상 적령아동은 2015.1.1.~2015.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입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학부모는 입학 적령기 1년 전후로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자녀의 입학 시기를 선택하여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주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조기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입학은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38 교육비 지원 관련

질의 지자체에서 교육비 조사·신청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을 당시 어머니가 외국인이어서 외국인등록번호로 금융재산 조회를 요청하여 결과값이 나왔는데 교육비 지원 신청 이후 외국인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경우 재산 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하는지요?

회신 2021년 전화문의(교육복지정책과)

- 재산조사를 다시 실시하지 않고 기존 결과 값으로 진행을 하되, 추후 확인 조사 시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39 초등학교 통학가능 거리 관련

질 의 초등학생의 통학가능 거리는 1500m 이내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근거법을 알고 싶습니다.

회 신 2021년 전화문의(교육복지정책과)

- 현재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1항 제11호, 제12호에 의거 관할지역 초등학교의 학급 편제와 통학의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근거 규정에 따라 거주지를 기준으로 1500m 이내에서 초등학생들이 통학가능한 통학구역이 설정됩니다. 다만,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초등학교 중 학생 수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 수가 학년당 1개 학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까지 통학거리를 확대할 수 있으나,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해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결정하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초등학교는 통학거리가 1500m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서에는 초등학교 통학거리를 도보 30분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40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주체

질 의 유치원 교사가 유치원에서 일어난 아동학대를 목격하고도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유치원교사에게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는 건가요?

회 신 2021년 전화문의(교육복지정책과)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2호,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란 지자체의 장을 말합니다.

41 초·중·고 학생의 교육비 지원과 교육급여의 차이

질 의 초·중·고 학생 교육비와 교육급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회 신 2020년 전화문의(교육복지정책과)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기준이 동일하고(권리성 급여),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이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재량적 예산사업)으로 시도별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한번 선정되면 계속 그 자격이 유지되며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교육비는 예산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매년 대상자를 새로 선정합니다. 다만,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한번 신청하면 올해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신 신청해드리는 것이므로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생지원

42 상담일지 작성간 문제점에 대한 보완 요구

질의 상담일지 작성과 관련하여 제도적 개선 요구

회신 2021-10-05(학교생활문화과)

- 교육부는 상담의 효율적 운영 및 향후 자료 활용 등을 위하여 학생 상담일지의 기록·관리·보존 등에 관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전 민원 및 유선으로 상담일지의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 상담일지의 기록·관리·보존 등에 관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향후 관련 방안 수립 후 상담일지 작성과 관련된 보다 안정화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3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관련

질 의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의 교육 인가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나요?

회 신 2019-04-01(학생건강정책과)

-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82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규정된 '응급구조사'의 직무 관련 분야는 민간자격 신설금지 분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의 시행 주체는 학교장이므로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에 활용하고자 하는 강사가 소지한 자격 등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요건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4 유치원 영양사 배치 관련 규정

질 의 유치원영양사 배치와 관련하여 「학교급식법」과 「식품위생법」 중 어느 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회 신 2021-02-22(학생건강정책과)

- 「학교급식법」이 개정(2021.1.30.시행)됨에 따라 모든 국·공립유치원 및 원아(현원)수 100인 이상 사립유치원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어 「학교급식법」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학교급식법」을 적용받게 된 유치원의 경우는, 학교급식법령에 따라 영양교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급식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영양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200명 미만 유치원으로서 같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2개의 유치원마다 공동으로 영양교사를 1명씩 둘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법 시행당시('21.1.30.) 영양사가 배치된 경우에는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간주)

45 「학교급식법」 적용 유치원 관련

질 의 「학교급식법」을 적용받게 된 유치원에서 작성해야 할 필수서류 등

회 신 2021-02-05(학생건강정책과)

- 「학교급식법」을 적용받게 되는 유치원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①항의2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급식인원, 식단, 영양 공급량 등이 기재된 학교급식일지와 식재료 검수일지 및 거래명세표' 등의 서류를 비치 및 보관(보존연한 3년)하여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 학교급식 법령에 명시된 학교급식관련 서류 외에 유치원에서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 등에 대하여는 '유치원급식 위생관리 안내서 및 운영·영양관리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각 시도교육(지원)청 및 유치원)해 드린 바 있으며, 본 안내서는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 및 학교급식정보마당(www.sfic.go.kr)에도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6 전처리 농산물 해당 여부

질 의 ‘뿌리절단 상추와 겉잎제거 양배추’가 전처리 농산물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문의

회 신 2020-12-01(학생건강정책과)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에 따르면 수확 후 세척, 선별, 박피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하여 즉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를 ‘전처리 농산물’이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뿌리절단 상추와 겉잎제거 양배추를 납품받은 학교에서는 세척, 절단 등의 작업을 거친 후 조리공정에 들어가므로, 해당 농산물은 학교급식법령에서 규정한 전처리 농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뿌리절단 상추와 겉잎제거 양배추가 학교급식법령상 전처리 농산물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의 농산물 유통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식재료의 가공방법, 형태 등을 구분하여 유통 온도 등을 달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학교급식에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47 올바른 성가치관 교육 관련

질의 올바른 성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초등학교부터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해 주세요.

회신 2021-10-12(학생건강정책과)

- 교육부에서는 2015년 단위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성교육표준안을 개발, 적용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성가치관과 성의식, 성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학년별 15차시 이상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8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 방법 등

질 의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한 납품업체 선정기준, 위생점검 및 단속실적, 업체별 공개된 보고서나 자료 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 신 2021-10-21(학생건강정책과)

-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의 내용은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한 납품업체 선정기준, 위생점검 및 단속실적, 업체별 공개된 보고서나 자료 등'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그 중에 교육부 소관사항인 납품업체 선정기준 등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먼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구매시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선정·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양교사 및 영양사는 학교관계자 등과 함께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등급 등에 대한 대면검수를 통해 안전한 급식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학교에서 식재료 공급업체와 구매계약 체결 시에는 무조건 '최저가' 낙찰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여 제한적 최저 가(낙찰 하한율*)를 적용하고 있으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을 통해 결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2천만원 이하는 예정가격 90% 이상, 2천~5천만원 이하는 88% 이상
- 한편,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하에 교육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하고, 점검결과 부적합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함께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귀하께서 말씀하신 나라장터와 eaT(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는 식재료 구매계약 체결 시에 비대면 전자계약을 위해 이용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이며, 이에 대하여는 eaT 운영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공사 학교급식부(02-6300-18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 초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가능 여부 문의

질 의 2000년대 중반까지는 초등학교 졸업자가 졸업연도 제1회 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2021년 현재는 초등학교 졸업예정자에게 졸업 직후 실시되는 중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접수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예정자에게 졸업연도 제1회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를 불허하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인지 문의합니다.

회 신 2021-10-20(교육기회보장과)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검정고시위원회를 설치하여 검정고시 공고, 응시원서의 접수, 출제·채점, 합격증 발급 등 검정고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중졸 검정고시 응시자격은 1980년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5조의2에 따라 '국민학교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규정되었으며, 2015년에 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서도 아래와 같이 응시자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제35조(응시자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2.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2019년까지 검정고시 시행 공고문에 따라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는 검정고시 응시가 제한되었습니다. 검정고시 공고일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해당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공고일 이후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검정고시 응시가 불가하였습니다.
- '2019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도교육청 및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중졸 검정고시 응시자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 '졸업식은 행사일 뿐 법령상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학생의 진급 및 졸업은 학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졸업식과 무관하게 2월 말까지 초등학교 재학생 신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시도교육청 검정고시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제1회 중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부터는 응시자격 제한 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공고되고 있습니다.

2020년 이전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2020년 이후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응시자격 제한〉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 단, 당해연도 초등학교 졸업자는 2월말까지는 재학생 신분에 해당되어 1회차 중졸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함

- 아울러, 초등학교 졸업자가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중학교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취지에 반하며,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조기진급 및 졸업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제도권 내에서도 실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전화민원

50 고졸 학력 취득 검정고시 응시자격 여부

질 의 자녀가 현재 중3으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내년에 고졸 검정고시를 보고 외국 대학에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 상반기에 있을 검정고시를 볼 수 있나요?

회 신 2021년 전화문의(교육기회보장과)

-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는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당해 연도 중학교 졸업자는 2월말까지 재학생 신분에 해당되어 1회 차 고졸 검정고시에는 응시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자녀분의 경우 내년 2회차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1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관련

질 의 대안교육위탁기관입니다. 대안교육위탁기관 종사자의 아동학대범죄 전력자를 점검하라고 하여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데 전력자의 의미 또는 범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아동학대범죄 전력자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 신 2021년 전화문의(교육기회보장과)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중 법원으로부터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시도교육청의 담당자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종사자 등의 명단을 취합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 명단을 업로드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의 조회의뢰와 회보를 시스템 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확인된 경우, 교육청은 해당 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위탁기관 지정 취소 및 대상자 해임 등 관련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52 특성화고교 학생의 방송통신고교로의 전입학 가능여부

질 의 현재 공업계열의 특성화고교 2학년인데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전학을 갈 수 있는지요?

회 신 2021년 전화문의(교육기회보장과)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고등학교로의 전·편입학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 6호 관련

질 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제1호와 제6호가 있는데, 법을 보면 그 중 제6호 조치가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의미가 좀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어떤 조치들을 말하는 건가요?

회 신 2021년 전화문의(학교생활문화과)

- 학교폭력 피해유형 및 연령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해바라기센터 지정병원 등 의료기관 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법률구조기관,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6호 조치의 구체적인 방안은 학교에서 정하는 것이라 학교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54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전학 관련

질 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인데 학교폭력자치위 결과가 나와서 보호조치도 받은 상태입니다. 학교에 전학을 요청하니 가해 학생 측에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서 전학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해학생이 행정소송에 들어갈 경우에는 피해학생으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회 신 2021년 전화문의(학교생활문화과)

- 행정소송에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과에 따른 피해학생의 보호조치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학생측이 행정소송으로 집행정지 요청을 하여 법원에서 인용을 했을 경우 집행정지가 될 것입니다.

  만약,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면 어느 부분에 대한 집행정지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가지고 행정소송을 건 것인지, 가해학생의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인지도 관할 교육청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조치는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행정소송 결과와 판결 결과를 봐야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관할교육청의 담당자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55 학교급식 식재료의 방사능 허용수치

질의 초중고 학생의 학교급식 식재료 중에 생선, 조개 등 수산물의 방사능 종류(세슘, 요오드)마다의 허용수치가 있습니까?

회신 2021년 전화문의(학생건강정책과)

-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가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합니다. 국내에서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납품업체나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대부분의 국내산 식재료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 방사능 관리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전체에 대한 방사능 관리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지 학교급식 식재료로 한정하여 별도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급식의 식재료든 공공기관 단체급식의 식재료든 식품의 방사능 관리는 유통단계에서 검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7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방사성물질 안전성 검사 품목과 허용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56 2021년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검진결과서 발급 횟수

질 의 학교급식 납품업체 직원으로 급식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데, 올해 건강검진 결과서를 1회만 발급하면 된다고 하기도 하고 2회를 발급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 신 2021년 전화문의(학생건강정책과)

- 학교급식 종사자의 경우 「학교급식법」에 의거 6개월에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 업무가 원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교육부에서는 적극행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1년에 1회 받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즉,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기 전까지 「식품위생법」에 따라 1년에 1회 받는 것입니다.

학교제도

57 능력에 따라 교육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요구 관련

질의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건의합니다.

회신 2021-2-22(학교정책과)

- 교육부는 상대적 서열화가 아닌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둔 교수·학습 및 평가 체제를 통해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현시킬 수 있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귀하가 건의한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내년부터 학점제 제도를 부분 도입하고 2025년에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58 학교 배정 관련 문의

질 의 친권, 양육권 없는 모친과 생활하는 자녀의 모친 거주지에 근거한 학교 배정

회 신 2021-1-11(학교정책과)

- 먼저 본 질의와 관련한 법령은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입니다.

  1) (‘보호자’의 개념)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르면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입학할 학교의 변경)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3) (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부친의 유아 인도 청구 및 모친의 친권·양육권 변경 신청 등 친부와 친모 사이에 자녀와 관련한 다툼이 먼저 종료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학생에게 적합한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교육청과 학교에 충분히 소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의 입학할 학교의 변경 관련 문의

질 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에 대한 해석 요청

회 신 2020-12-15(학교정책과)

- 해당 조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상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상황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해당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마련한 입학할 학교의 변경에 관한 지침 또는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인사·복지

60 교사의 법적 신분

질 의 교사의 법적인 신분

회 신 2021-10-5(교원정책과)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따라 교육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으로 구분됩니다. 교육공무원의 자격, 임용, 보수, 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대하여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에 따라 교육공무원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교육기관·교육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를 말하며,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에 학교에는 교원과 행정직원을 두며, 교원은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원 중 교원의 신분이며,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는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의 신분임을 알려드립니다.

61 교원의 국적 상실

질 의 교원이 국적이 상실될 경우 교원 신분 유지 가능 여부

회 신 2021-8-31(교원정책과)

- 「국적법」 제18조(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으며,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당연퇴직)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헌법」 제25조(공무담임권) 제한됨에 따라 교육공무원 신분 유지는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규교원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공무담임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교원으로서의 신분 유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62 특수교사가 교과교사인지 여부

질 의 자격종별 특수학교교사도 '교과교사'라는 것에 대한 홍보 건의

회 신 2021-4-26(교원정책과)

-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및 동법 제23조(교육과정 등)제3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교과)제1항에 따라 자격종별 특수학교 교사는 자격증에 정교사로 표시되며,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는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입니다. 다만, 일부 학교에서 특수교사는 교과를 담당하지 않는 교사로 오해를 하고 있는 바, 시도교육청에 특수 교사들이 잘못된 오해로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63 교육공무원 임용 시 신원조사

질 의 교육공무원 임용시 신원조사 대상

회 신 2021-8-10(교원정책과)

- 「보안업무규정」 제36조(신원조사)가 2020.12.31.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임용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국가보안시설, 보호 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 포함), 그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도 2021. 3. 31. 개정되었으며,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및 [별표 4](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에 따라 신원조사 회보서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따라서,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육공무원 임용시 신원조사 회보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64 교육공무원의 동반휴직과 육아휴직 관련

질 의 현재 동반휴직 중인데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또한 육아휴직 후 다시 동반휴직이 가능한가요?

회 신 2021-11-16(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의 동반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제1항제10호에 따라 배우자의 국외근무, 학위취득 목적의 해외유학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실시할 수 있으며, 동법 제45조(휴직기간 등) 제1항제9호에 따라 동반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동반휴직 중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의 동반휴직에 대하여 복직신고를 함과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직과 동시에 동반휴직이 만료되었으므로 육아휴직 후 동반휴직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직원의 임용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휴직, 복무 등에 관한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고,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휴직의 결정)에 따라 임용권자는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후 동반휴직을 신청할 때에 이를 새로운 동반휴직으로 보고 휴직 승인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소속 교육청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5 교육공무원의 연수휴직 관련

질 의 교육공무원의 연수휴직 기간과 3년 연수휴직을 승인 받은 후 2년 만에 교육과정을 조기수료 하였다면 학위 취득을 위해 남은 1년도 휴직상태가 유지되나요?

회 신 2021-07-15(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의 연수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제1항제8호 및 제45조(휴직기간 등) 제1항제7호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3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는 휴직입니다.
-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인사실무를 통해 연수휴직 사용 시 법정 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기간에 따라 정하여 사용하되,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단위로 휴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위취득을 사유로 3년간의 연수휴직을 허가받은 경우, 2년 만에 교육과정을 조기 수료하고 학위취득을 하지 않았다면 연수휴직의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남은 1년 기간 동안은 휴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6 교육공무원의 고용휴직 관련

질 의 민간기업에 1년 근무로 고용휴직이 가능한가요?

회 신 2021-06-24(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휴직은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직입니다.
- 또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3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간기업에 고용되는 경우는 고용휴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휴직 처리 등에 대한 권한이 임용권자인 시도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고용휴직 승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속교육청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67 육아휴직 중 겸직 및 대학원수강 관련

질 의 육아휴직 중 겸직 및 대학원 수강이 가능한가요?

회 신 2021-10-15(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직입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에 따르면 휴직자가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6조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 장은 휴직자의 복무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 중에 하려는 업무가 겸직 허가가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의 판단을 받으셔야 하며, 겸직허가는 소속기관장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겸직하려고 하는 직무의 상세 자료(수익발생 내역, 겸직 내용, 겸직기간 등)을 소속기관에 제출하여 겸직 허가 여부를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 여부는 대학원 수강이 육아휴직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대학원 수강이 가능한지에 대해 임용권자가 구체적인 판단 후 결정을 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교육자치법」 제27조(직원의 임용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복무 지도감독 등에 관한 권한이 시도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육아휴직 중 겸직 및 대학원 수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토대로 소속 교육청 복무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8 교원의 연가저축 관련

질 의 국공립 교원도 연가저축이 가능한가요?

회 신 2021-11-10(교원정책과)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에 의해 교육부장관은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교원의 휴가에 대해서 따로 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원의 휴가에 대해서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두고 있습니다.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10조에 따라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연가에 대해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5항(연가보상비)과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등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국·공립 교원인 경우 연가의 저축은 적용되지 않아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제도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69 정년퇴직교원의 기간제교장 임용가능 여부

질 의 2021. 8. 31.자로 정년퇴직을 하는 교장선생님이 기간제 교장으로 임용이 가능한가요?

회 신 2021-08-05(교원정책과)

- 먼저,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기간제교원)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정규교원의 일시적 결원 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임을 안내드립니다.
- '기간제교장 임용 가능 여부' 관련하여 교육부는 기간제교원 질의응답 사례집(2020.8. 발간)을 통해 다음과 같이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2항에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장으로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장이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궐위가 된 경우 교감이 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 교장이 지명한 교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 아울러, 2012년 감사원은 교육청 기관운영 감사 결과 일부 사립학교에서 「사립학교법」 제54조의4(기간제교원) 제1항 각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정년초과 기간제교장의 임용을 승인하고 인건비를 지원한 사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도록 하고, 특히,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라 교장이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교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향후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70 기간제교원의 연가일수

질 의 00교육청에서 20**.3.1.~20**.2.28.의 4년 동안 1년 단위 계약을 통해 근무하고 20**.2.28.에 퇴직금 수령 후 퇴직하였고, 같은 교육청에 같은 해 3.1.자로 다시 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연가일수 계산을 위해 4년간의 근무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될까요?

회 신 2020-12-21(교원정책과)

-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라 정규교원의 휴직, 파견 등에 따른 결원 보충, 특정교과 한시적 담당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학교장(학교법인)이 한시적으로 임용하는 교원입니다. 또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 퇴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간제교원의 연가는 계약서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반드시 계약내용으로 정하고, 동일학교에서 단절기간 없이 계속 근무시에 계약기간을 누가 적용하며, 연도가 바뀌어도 계약기간을 분할하여 적용하지 않고 전체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총 연가일수를 적용합니다. 연가 일수 산정 시 퇴직 처리된 기간 4년(20**.3.1.~20**.2.28.)은 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재공고를 통해 재임용된 기간(20**.2.28.~현재)만 계약기간으로 산입하여 연가 사용일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 한편,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이 폐지되어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한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각급학교(학교장)에서는 기간제교원 등 계약제 교원 채용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교원의 연가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은 소속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길 안내드립니다.

71 산학겸임교사 등 강사 범위 관련

질의 흡연예방교육, 진로특강 등과 관련된 외부강사도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의 강사에 해당될까요?

회신 2021-11-18(교원정책과)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제1항에 따라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에서 강사는 아래와 같이 그 자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따라서, 흡연예방교육, 진로특강 등은 담당과목의 교과지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외부 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의 강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72 초·중등학교 교사의 인사교류 관련

질의 서로 다른 시도에서 근무하는 부부가 동일한 근무지에서 근무할 방법은 없는지?

회신 2021-09-02(교원정책과)

- 시도간 인사교류를 통해 동일 시도의 근무가 가능합니다. 교원의 시도간 인사교류는「교육공무원임용령」제3조제5항 및 제13조의3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교원의 수급 상황, 인사교류 대상 및 신청 현황,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73 교원의 징계 관련

질의 정치편향적 교육을 한 교원의 징계 가능 여부

회신 2021-10-06(교원정책과)

- 「교육기본법」제6조,「국가공무원법」제65조에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교육공무원 징계령」,「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등 법령에 의하여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에 따라 징계 또는 주의·경고 등 인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74 아동학대로 수사개시 통보된 교사와 피해학생 분리 여부

질의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교사를 신고하여 수사개시가 이루어진 경우 교사와 피해학생 분리조치 가능 여부

회신 2021-10-20(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법」(법률 제18455호, '21.12.25.시행) 제44조2제1항제4호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 행위로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직위해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로 수사개시가 이루어진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해제하여 피해학생과 분리 조치 가능합니다.

75 교사 결격사유 관련

질의 교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 질의

회신 2021-9-24(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동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 교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강사, 산학겸임교사 등도 임용에 있어 동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 아울러, 국가공무원과 별개로 「교육공무원법」 제10의3(채용의 제한)에 해당되는 금품수수 행위,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76 사범대학으로의 전과 자격 요건

질 의 사범대학으로의 전과 자격 요건

회 신 2021-10-12(교원양성연수과)

-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제28조(학생의 정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
>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③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학년 이상인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다음으로, 교원양성과정 정원 운영과 관련하여 교원자격검정 관련 업무 시행을 위한 안내 자료인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 • 전과, 재입학 허용 범위
>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발생 시 충원 가능(단, 정원내·외 구분)

- 위 안내와 같이, 교원양성과정으로의 전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발생 시 정원 내·외를 구분하여 학년도별 입학 정원의 범위 내에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7 교원양성기관 학점인정, 입학조건 문의

질 의 교육대학원의 학점교류 시행 및 입학조건 무의

회 신 2021-9-24(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동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 교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강사, 산학겸임교사 등도 임용에 있어 동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 아울러, 국가공무원과 별개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에 해당되는 금품수수 행위,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전화민원

78 교장공모제 관련

질의 **현재 A고등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이 정년 전에 A고등학교에 교장 공모제를 통해 교장으로 올 수 있나요?**

회신 2021년 전화문의(교원정책과)

- 현직 교장도 교장 공모제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로의 공모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여건 상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로의 허용이 부득이한 경우 개방형 학교는 교육감이, 그 외의 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승인 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교장 공모에는 임용일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자로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단, 교육감이 개방형 공모학교(신규 지정 포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임 교장(공모교장 포함)의 지원을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라면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도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79 원로교사 수당 교육경력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 포함 여부

질 의 교직수당 중 원로교사 수당의 교육경력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나요?

회 신 2021년 전화문의(교원정책과)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다목1에 의거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은 제외)에게 월 5만원의 수당(원로교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호봉경력 산정 시 교육경력에 있어 육아휴직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문구는 없습니다. 다만, 원로교사 수당은 학교에서 교원으로 실제 근무한 장기 교육경력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교직수당 가산금이고, 교육경력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제1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것을 말한다. 라고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 실제 학생을 가르치지 않은 육아휴직기간은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0 원로교사 수당 지급일 관련

질의 원로교사 수당 지급 기준일은 만 5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인가요?

회신 2021년 전화문의(교원정책과)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다목1에 의거 고등학교 이하의 각 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은 제외)에게 월 5만원의 수당(원로교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여부 기준일은 매달 1일이기 때문에 해당 교원의 나이와 교육경력이 지급조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하여 지급합니다.

81 초·중고교 교원 신규 임용 시 성비할당제 유무

질의 초·중고교 교원을 선발할 때 남자든 여자든 할당제가 도입되어 적용되고 있는지요?

회신 2021년 전화문의(교원정책과)

- 교원 임용시험에서의 성비할당제(양성평등목표제)의 도입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취업기회 균등보장' 등과 상충될 우려가 있는 사안입니다.
- 교원 임용시험에서의 성비할당제는 아동교육 측면에서 교사의 성비 차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이 실증적인 조사결과로 제시되는 등 필수불가결한 논리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개경쟁 원칙 및 남녀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바, 교원임용시험에서의 성비할당제 도입은 공론화 과정 등의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에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82 '아빠의 달'수당 시행지침 관련

질 의 현직 초등학교 교원으로 내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2022년부터 남자교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아빠의 달 수당이 150%로 올라간다는 내용을 봤는데 근거 지침은 무엇인지?

회 신 2021년 전화문의(교원정책과)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입니다.

83 교원의 퇴직준비휴가 폐지 사유 확인

질의 1년 이내의 정년퇴직 예정 교원에게 사회적응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던 공로연수가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21년 전화문의(교원정책과)

- 말씀하신 사항은 공로연수제도이며, 교원에게 적용되던 것은 퇴직준비휴가로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을 할 교원은 퇴직예정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었던 제도입니다.
-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 7. 1.부터 도입됨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면서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는 등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2005. 6. 30. 일부 개정하였고 해당 조항의 내용은 2006. 1. 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다만, 교원의 경우는 주5일 수업제 미실시 학교의 일부 교원들이 있어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제도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다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라 교육부는 2012학년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주 5일 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하는 것을 발표하였고, 2013년 안전행정부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 일부 교원(주5일 수업제 미실시 학교) 한시 적용 특별 휴가제(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를 삭제하는 내용 등의 일부 개정을 하면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서도 이 세 개의 한시적인 특별휴가제도가 삭제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 공로연수는 「공무원임용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실시하는 것으로 1년 이내의 정년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사회적응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준비휴가 폐지 당시부터 교육공무원에게도 공로연수 도입이나 다른 대안을 마련하라는 교원단체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나 이 연수제도는 아직 교육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84 교원의 상피제 도입 여부

질의 엄마가 중학교 교사이고 그 자녀는 중학교 3학년으로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있는지요?

회신 2021년 전화문의(교원정책과)

- ‘교원의 상피제’는 시험지 문제 유출 등 교내 비리 사건이 있으면서 학교에 교사인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상피제’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9년부터 각각의 시도교육청 인사 관리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피제’ 운영에 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 호봉획정을 위한 교육경력 인정 관련

질 의 내년에 전문상담교사 임용시험을 볼 예정인데 대학의 상담센터에서 비정규로 상담업무를 보고 있는데 정규직과 같은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시간으로 일하고 있을 경우 호봉 경력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회 신 2021년 전화문의(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국·공·사립의 유·초·중등학교 및 대학·대학원에서 「학교회계직원 관리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한 경력은 5할 이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학 등으로 일을 하지 않고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기간은 제외합니다.
- 또한, 업무 분야와 동일한 교원자격증 취득 후의 근무경력은 8할 이내를 인정하는데, 취득한 교원자격증과 동일한 업무분야의 교육경력인지를 포함한 교원호봉 획정 시 경력 인정에 대한 최종 판단은 추후 교원 임용 후 소속 교육감이 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자격

86 1급 정교사 자격 마약검사 관련

질의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마약 검사를 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았습니다. 어떤 경위에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마약 검사를 필수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마약과 교사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전혀 모르겠고 이런 법규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설명도 없이 상명하복식으로 지시해 버리는 이 진행과정 자체가 아주 불만스럽습니다. 또한, 마약 검사를 하게 된다면 자비 부담 없이 전부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확실히 전체 인원에게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명확한 답을 주십시오.

회신 2021-07-09(교원양성연수과)

- 먼저, 국회 입법을 통해 공포('20.12.22.), 시행('21.6.23.)된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상기 내용과 같이 국회에서 의원 발의하여 입법예고('20.6.29.~7.8.,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를 통해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법률에서 규정한 교사자격취득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후속 절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예고('21.4.7.~5.17., 정부입법예고 www.lawmaking.go.kr) 및 관계 기관 협의회('21.2월~교원양성기관 대상 13회 이상)를 거쳐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겸정령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시행('21.6.23.)한 바 있습니다.
- 검진 비용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법률 시행 첫 해임을 감안, 교육청 자격연수 대상자의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7월 중 지원금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할 예정이며, 교원양성 기관 협의회('21.4.14.~) 개최 및 교원양성기관 대상 공문 안내('21.6.21.) 등을 통해 이를 사전 협의·안내한 바 있습니다.
- 또한, 결격사유가 명시된 타 법령에서 마약류 진단을 위해 '의사의 진단서'를 모두 자비로 제출((「의료법」, 「약사법」, 「장애인복지법」, 「국민영양관리법」 등)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부에서는 교원자격 취득 예정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검사 후, 추가 비용이 적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국가건강검진과 연계 가능)'를 제출 가능하도록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시행('21.6.23.)하였으며,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21.6.22.)함으로써 국가건강검진 병행 시, 5,000원 / 비병행 단독 검사 시, 6,000원의 비용으로 마약류 진단 검사 및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이 가능(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검진한 교육청 자격연수자는 검사 결과 우편으로 수령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법률 시행의 취지, 마약류 진단 검사 절차, 비용 등에 관련한 상기 사항들을 교원양성기관과의 온라인 협의회 및 공문을 통해 안내하였으며, 선생님들을 위한 안내 소책자를 별도로 만들어 배포하고 이를 교육부 누리집(정책정보공표-교원)에 탑재한 바 있습니다.

87 강사 경력을 통한 교육실습 면제 여부

질 의 '초등스포츠강사' 경력을 통한 교육대학원 교육실습 면제 할 수 있는지요?

회 신 2020-03-24(교원양성연수과)

- 먼저 교육실습 면제와 관련하여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제5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6조(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 다음으로 위 조항에서 언급된 '산학겸임교사 등'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따라서, 귀하께서 상기 법령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등스포츠강사'가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의거하여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분류되는지에 관하여서는 계약상의 신분이나 직위, 교육 담당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실습의 면제 여부는 학칙에 따라 대학의 장이 판단하니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 대학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8 중등학교정교사 2급 자격기준 관련

질의 대학교수로 10년 이상 근무 중인데 중등학교정교사 2급 자격증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회신 2020-09-17(교원양성연수과)

- 먼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2]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사 자격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격 / 학교별	정 교 사(2급)
중등학교	1.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4.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5. 대학·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 6. 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7. 초등학교의 준교사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 8.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9.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용권자의 추천과 교육감의 전형을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직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임용권자의 추천 대상자 선정 기준과 교육감의 전형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또한 이와 관련한 무시험검정의 신청에 대하여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이외의 자로서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무시험검정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졸업 또는 수료증명서(졸업 또는 수료를 교원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경력증명서(일정한 경력을 교원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상기 규정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으시다면, 교육감에게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무시험검정을 위한 원서 및 증명서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 초등교사 자격기준 전공학점 관련

질 의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취득을 위한 전공 세부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 신 2020-09-01(교원양성연수과)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전공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학점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1항 관련 [별표 3]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격종별	전공과목
초등학교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 교과교육 및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90 전문상담교사 2급의 자격기준관련 문의

질 의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 취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회 신 2020-05-26(교원양성연수과)

- 전문상담교사 자격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2]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1급)	전문상담교사(2급)
1.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1.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 귀하께서 현재 전문상담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이며, 첫 번째는 '전문상담교사(2급) 제1호' 자격기준에 의거 전문상담교사(2급) 교직과정을 운영하는 일반대학에서 양성과정을 마치는 것입니다.
- 두 번째 경우는 '전문상담교사(2급) 제2호' 자격기준에 의거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문상담교사(2급) 제3호' 자격기준에 의거 취득하는 방법은 과거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현재는 가능하지 않으십니다.

전화민원

91 학교현장실습 가능기관

질의 2020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p.71의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교육부 고시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제4항)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중등학교’에서 말하는 유치원, 중등학교와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21년 전화문의(교원양성연수과)

-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중등학교’의 유치원, 중등학교는 국내 교원양성기관이 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이 지정을 한 외국 소재의 정규 외국 유치원과 정규 외국 중등학교, 또는 국내 교원양성기관이 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교육청이 지정을 한 외국 소재의 정규 외국 유치원과 정규 외국 초·중등학교를 말합니다.

92 교육봉사활동 운영기관 인정 여부

질의 〈교원자격검정 실무 편람〉에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으로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신고증도 비영리기관 인가증에 해당하는지요?

회신 2021년 전화문의(교원양성연수과)

- 교육봉사활동 운영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 중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허가증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을 말합니다. 교육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 교육봉사활동 운영기관이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이라는 증빙 서류를 가지고 대학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니 소속대학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3 교육봉사활동이 이행되는 시간 관련

질의 교육봉사활동 협력기관에서 주말이나 일과가 끝나고 난 후에 교육봉사활동을 해 줄 수 없냐고 물어보는데, 주말이나 일과 시간 이후의 교육봉사활동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회신 2021년 전화문의(교원양성연수과)

- 교육봉사활동은 유·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봉사활동 협력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주중에 해야 하는지, 주말에 하는 교육봉사활동이 인정되는지, 일과가 끝난 후의 교육봉사활동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대학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94 교육대학원 입학 전 학점은행제 전공과목 인정 관련

질 의

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대학원 입학을 준비 중입니다. 교육대학원 입학 요건에 대해 교육대학원에 문의를 하니 관련 전공으로 30학점이 되어야 교원양성 과정으로 입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학부 때 취득한 관련 전공을 교육대학원으로부터 24학점 밖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관련 전공으로 나머지 6학점을 학점은행제로 이수하여 총 30학점이 되면 교육대학원 교원양성과정으로 입학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 신

2021년 전화문의(교원양성연수과)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지 않고 교육대학원 입학에 필요한 전공 학점을 채우기 위해 일부 학점만 이수를 하더라도 교육대학원 학칙에 명시된 학점인정 범위에 따라 해당 교육대학원으로부터 판단을 받고 입학이 가능합니다. 단, 이수구분이 '전공'으로 표기된 과목이라야 합니다.
- 그 동안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교육대학원 입학에 필요한 전공학점으로 인정을 했었으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관련 전공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대학원에 입학이 가능한 것으로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의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95 교원자격 취득 시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 관련

질 의 21년 올해 6월부터 교사자격취득 신청자들은 마약류 중독 검사를 받은 후 결과 통보서를 검정기관(대학)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외에 체류 중이라 국내에서 마약류 투약 중독검사가 어려운데 외국에서 검사한 것도 인정이 되나요?

회 신 2021년 전화문의(교원양성연수과)

- 국내에서는 교육부가 '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와의 협약으로 TBPE 검사를 하고 그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3가지로, 만약 외국에는 TBPE 검사가 없거나 할 경우에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되지 않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대학은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96 교원자격 무시험검정기준 중 성인지 교육 관련

질의 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2회 이상,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4회 이상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성인지 교육 1회' 의 인정기준을 지침으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1회의 시간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교육이 50분 이상인지 1시간 이상이어야 하는지? 1회의 교육시간을 정하고 있나요?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은 4시간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다른 대학을 다니는 친구는 3시간 30분 정도라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2021년 전화문의(교원양성연수과)

- 성인지 교육 1회를 몇 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시간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1회 4차시 이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차시를 몇 시간으로 편성하여 운영할지는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할 사항이니 소속 학교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97 시간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의 인정 여부

질의 교육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중으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1급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경력에는 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한 경력을 인정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시간제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21년 전화문의(교원양성연수과)

- 교원자격 취득과 관련한 교육경력의 범위는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1호 내용 중 "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한 교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한다."에 따라 시간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교육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98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 의견/만족도 조사 내용 수정 가능여부

질의 고등학생입니다. 이번에 교원능력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에 응답을 하고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의견을 잘못 입력한 것이 있어 수정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회신 2021년 전화문의(교원양성연수과)

- 만족도 조사 제출 후에는 수정하거나 다시 제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응답하였는지 충분히 확인하고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99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시 본인확인번호 관련

질의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의견/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학생본인 확인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학생본인 확인번호가 무엇이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회신 2021년 전화문의(교원양성연수과)

- 학생본인 확인번호는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참여 시 본인 확인 여부만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번호입니다. 학생본인 확인번호는 학교에서 발급하며 분실 시 학교에서 새로운 번호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100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 수정 가능여부

질의 초등학생의 학부모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참여를 하였는데 선생님에 대한 칭찬을 적었어야 했는데 미처 칭찬 글을 기재하지 못하고 제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선생님 덕분에 사회교과가 무척 좋아졌다며 이러한 내용을 꼭 기재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이라도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며 수정을 할 수는 없을까요?

회신 2021년 전화문의(교원양성연수과)

- 매우 안타깝지만 조사에 참여 완료한 만족도 조사자는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내용에 대해 확인 및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견/만족도 조사 참여 후에는 수정하거나 다시 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응답하였는지 확인하고 제출이 필요합니다.

101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 관련

질의 중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둔 학부모입니다. 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라고 하는데, 아이 둘이 같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가 둘이기 때문에 두 번을 해야 하는 건가요?

회신 2021년 전화문의(교원양성연수과)

- 자녀 학교별로 1번의 참여만 가능합니다. 선택하실 학교의 자녀수를 선택하신 후 학교찾기를 하여 학교에서 발급한 학부모 본인확인 번호를 입력하여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02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 시 본인확인 관련

질의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학부모 본인확인에 이름을 입력해야 하는데 키패드가 뜨지만 한글이 없어 이름을 넣고 본인인증을 할 수 없습니다. 키보드로 입력을 하려고 키보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도 한글을 입력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 2021년 전화문의(교원양성연수과)

- 학부모 본인확인란에는 학부모님의 이름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발급한 학부모 본인확인 번호를 입력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발급하여 안내받으신 학부모 본인확인 번호를 입력하시고, 만약 분실하신 경우에는 학교에서 새로운 번호로 재발급이 가능하니 학교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103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 시 익명성 보장 관련

질의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때에도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유치원에서 비밀번호를 받아오면 학부모가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원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학부모 본인확인번호라는 것이 있고 아이가 가정통신안내문을 통해 받아왔는데 익명성이 보장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조사기간이라면 누구든 나에게 부여된 본인확인번호로 들어가 내가 조사에 응답한 내용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말 익명성이 보장되는지 우려됩니다.

회신 2021년 전화문의(교원양성연수과)

-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마치고 제출을 한 이후에는 '참여 완료한 만족도 조사자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기간이라도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이 본인의 본인확인 번호로 로그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내가 설문에 응답한 내용을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의견/만족도 조사 참여 후에는 수정하거나 다시 제출하지 못하기에 정확하게 응답하였는지 확인한 후 제출이 필요합니다.
- 체크리스트형 응답내용은 통계처리한 후 결과 값을 선생님에게 제공하고 서술형 응답 내용 또한 응답자 정보는 제외하고 응답 결과만을 제공합니다. 즉, 누가 어떻게 응답하였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응답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시스템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익명성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104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관련

질 의 대학에서 교사론을 가르치는 시간강사입니다. 교장자격을 알아보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 1]에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무엇인가요?

회 신 2021년 전화문의(교원양성연수과)

-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교장 및 원장 자격 인정기준),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부관설정의 기준)을 말합니다.

105 교직과목 이수 면제 여부

질 의 중등 정교사 2급 자격증 소지하고 대학에 신입학을 하여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직을 이수하여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이전의 교원자격증 소지자들을 보면 교직과목 이수를 면제해 주던데 학교 측에서는 교원자격증 자격종별이 달라서 교직과목 면제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교직과목 면제가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 신 2021년 전화문의(교원양성연수과)

- 현직교원의 부전공 과정이 아니라면 중등 정교사 2급 자격기준 제7호에 의한 무시험검정 대상자일 경우에 교직과목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중등 정교사 2급 자격기준 제7호 대상자의 범위는 초등학교 준교사, 정교사(2급), 정교사(1급), 교감, 교장으로,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중등학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며 중등 정교사 자격증 2급을 취득할 경우에 교직과목 면제가 가능합니다.
- 2016년도 신·편입생까지는 중등학교의 정교사 2급 자격 소지자의 경우에도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7호로 인정되었었으나, 「법제처 법령해석 15-0487, 16-0551」에 따라 2017년 신·편입생부터 중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은 제7호의 자격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1년도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Ⅲ

교육안전정보

학생안전

1 「학교안전법」 용어 해석 질의

질의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 용어 해석 질의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의 용어 중 “수련활동”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용어 “수련활동”의 의미가 동일한지 해석 요청

회신 2021-03-03(학교안전총괄과)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수련활동”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련활동이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하며,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합니다.

- 따라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수련활동”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활동”의 정의는 동일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공제급여 범위

질 의 학교운동부 활동 중 입은 부상이 공제급여 대상인지에 대한 문의

회 신 2021-04-09(학교안전총괄과)

- 「학교안전법」 제2조의 “교육활동” 및 “학교안전사고”에 따라 학교운동부 활동 중 입은 부상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므로 공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급여의 지급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의 학교안전공제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공제급여 신청방법

질 의 행정사가 공제급여 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회 신 2021-04-28(학교안전총괄과)

- 「학교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지 제1호의 서식에는 위임인과 대리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 기입란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공제급여 청구의 위임 및 대리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4 학생안전교육 의무 실시

질의

○ 학생 대상 안전교육 의무 실시(1년 2회 이상)

-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안전과 직결된 교육 의무 실시 필요

회신 2021-05-11(학교안전총괄과)

- 모든 유·초·중·고 학생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생활안전·교통안전·폭력예방 및 신변보호·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재난안전·직업안전·응급처치의 7대 영역 안전교육을 매년 학교에서 최소 51시간 이상을 필수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19-214호)

- 특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별로 안전체험시설을 확충하여 급박한 위기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현장교육도 실시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전화민원

5 대학의 안전사고 보험(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관련

질의 많은 대학들이 학교 교육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이 입은 상해에 대하여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을 들어 학생들의 손해를 보장하고 있는데,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

회신 2021년 전화문의(학교안전총괄과)

- 대학은 안전사고 보험가입이 의무는 아닙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외부 보험사와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학생이 입은 상해 및 손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6 ‘아이알리미 앱’의 교육부 예산 지원 여부

질의 원아들이 유치원에 등·하원 하고 있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아이알리미 앱’이라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초등학생 안전강화사업의 일환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 앱을 운영하는 업체는 교육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아 앱을 만들어 이 사업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이 ‘아이알리미앱’이 제대로 실행도 안 되고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 2021년 전화문의(학교안전총괄과)

- 교육부에서 예산 지원하는 등·하교 알리미 앱은 없습니다.

교육정보

7 홍보자료 내 수정 요구

질의 코로나19 수기명부와 관련된 홍보자료 내 '시건장치'라는 단어 사용에 대한 수정 요구

회신 2021-06-21(교육정보화과)

- 문제제기 해주신 부분에 대하여 수정 후 자료를 '교육부 개인정보보호포털(privacy.moe.go.kr)〉자료실〉참고자료'에 게시하였습니다. 향후 홍보자료 배포 시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8 비대면 강의 시 화면 녹화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문의

질의 비대면 강의 시 화면 녹화 관련 개인정보보호 근거법령 또는 지침이 존재하는지 및 해당 지침 등이 교육기관이 전달되었는지 여부

회신 2021-10-06(교육정보화과)

- 문의하신 내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교육기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 먼저,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제49조)
-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됩니다.(제44조, 제44조의7)
- 아울러, 해당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70조, 제72조)
-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학교에서 비대면 강의를 실시하고 이를 촬영·녹화하려면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15조), 목적 외 이용(제18조), 파기(제21조), 유출통지(제34조) 등의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 등(제70조 이하)이 행해질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교원지위법」 제15조 등에서도 학생·학부모가 원격수업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 및 고발·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앞선 법령들에 근거하여 원격수업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21.3월)하고, 관련 지침을 홍보자료 형태로 제작하여 안내하였습니다.('21.3월, 5월, 2차례)

- 해당 지침에 따라 비대면 강의 참여자는 ① 비대면 수업영상을 불법적으로 녹음, 녹화, 촬영해서는 안 되고, ②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영상자료를 전달,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민원

9 휴대폰 미소지 학생의 나이스 학생서비스 이용 관련

질의 고2 학생으로, 학생이 휴대폰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미소지자) 나이스학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미성년자라 온라인으로 공공아이핀 발급도 할 수 없습니다.

회신 2021년 전화문의(교육정보화과)

- 학생이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공공아이핀을 발급받아 와서, 나이스 학생서비스에 회원가입을 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에 나이스 학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 저학년인 초등학교 1,2,3학년은 나이스 학생서비스에 회원가입까지는 가능하지만, 인증서 발급은 할 수 없어 학부모님이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10 기숙사 설치 중학교 현황

질 의 지역에 상관없이 기숙사가 설치되어 있는 중학교 정보를 알 수 있는지? 기숙사 비용면에서도 사립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곳을 알고 싶습니다.

회 신 2021년 전화문의(교육통계과)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교육통계서비스 - 알림·서비스 - 주요요청자료에서 〔공지〕 유초중등 시도별 주요요청자료 모음(~2021)을 클릭 - (17) 기숙사 현황 을 클릭하시면 첨부파일 '주요-18(유초) 초중고 및 기타학교 학교별 기숙사 현황(2015~2021).xlsx' 파일을 열어 각 학교별 기숙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자료에서는 기숙사 비용까지는 없지만 국·공·사립학교 설립구분을 확인할 수 있어 이를 참고로 해당 학교로 직접 문의를 하시거나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

11 석면 실내공기중 석면농도측정 기준에 관한 질의

질 의 석면 실내공기중 석면농도측정 기준에 관한 질의

회 신 2021-10-04(교육시설안전팀)

-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석면 실내공기중 석면농도측정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석면건축물의 농도측정 기준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준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2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집기류 이동 관련

질의 저희는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내부의 큰 가구나 집기들을 들어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지? 비닐보양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회신 2021년 전화문의(교육시설과)

- 교육부에서 발간한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2019.5)」의 석면 해체·제거 단계별 지침 p.9 “사전청소는 교실, 특별교실 등 실내에 있는 이동 가능한 집기류 등을 옮기고 다시 재설치 하는 비용을 반영하며, 소요되는 기간도 고려하도록 한다. 다만 이동이 어려운 고정된 설비 및 전자제품과 중량물 등은 이동대상에서 제외하되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보양을 철저히 한다. 이들 비품과 집기류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미리 보관공간을 확보해 둔다.” 또 p.11 “석면해체 작업 전, 책걸상 등 이동 가능한 기자재와 이동 불가능한 부착물 등을 결정하여 비품과 기자재를 이동한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학교에서 판단해야 하며,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석면 해체·제거와 관련한 편람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니 학교 소속 교육청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교육시설 외부 치장벽돌 보수·보강 안내서 관련

질 의 「교육시설 외부 치장벽돌 보수·보강 안내서」 2021년 개정판이 나왔다고 해서 보려고 하는데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회 신 2021년 전화문의(교육시설과)

- 2020. 8. 교육부는 「교육시설 외부 치장벽돌 보수·보강 안내서」를 공문을 통해 대학 및 시도교육청으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있지 않으며 대학 및 시도교육청으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 외부 치장벽돌 보수·보강 안내서」는 매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개정이 있을 수 있는 매뉴얼로 2021년에는 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2021년도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Ⅳ

고등교육

대학 학사·제도

1 코로나19 관련으로 2021년 2학기 대면 수업 반대

질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대면 수업 금지

회신 2021-10-21(대학학사제도과)

- 교육부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보완 지침을 교육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변경된 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즉시 안내하고, 대학과 관련하여 학생관리 및 방역관리 유의사항을 대학 학기별 사정에 맞게 안내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안내('20.4.23.), 제2판('21.5.12), 제3판('21.8.18.)
  ※ 2학기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21.6.24.) 및 학사운영방안(8.9.) 발표
  ※ '21년도 대학내 방역관리 강화 철저 협조 등 공문 통보(1.28., 2.3., 2.19., 3.3., 7.10., 9.10., 9.15.)

- 또한 지난 8.9.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방역당국의 백신 수급 상황과 연계하여 실험·실기·실습 위주 수업을 우선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이에 따른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1조,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학칙에 규정하여 각 대학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한 수업환경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2021학년도 2학기에는 전 국민 70%의 백신 1차 접종 완료시기를 기점으로 학내 안전한 대면활동을 단계적 확대하고, 외부기관과 협력한 방역체계 구축 강화 및 대학의 협조를 통하여 대학의 원활한 학사운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시행령」의 신속한 공포 관련

질 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시행령」의 빠른 공포를 부탁드립니다.

회 신 2021-02-01(대학학사제도과)

-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던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교육부는 2021학년도 입학전형에서부터 결원보충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법제처 심사 의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관계부처의 이견 제시로 수정안(2022학년도 입학전형까지 효력 연장)을 마련하여 현재 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학력인정) 제2항 의미

질 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학력인정) 제2항의 의미

회 신 2020-11-20(대학학사제도과)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 대학의 수료생은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참고로, 외국고등교육기관의 인정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고등교육정보센터(02-6919-3914)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폐교대학 제증명서 발급 관련 질의

질의 폐교대학 제증명서 발급 관련 질의

회신 2020-09-21(대학학사제도과)

- 폐교대학 졸업증명서 등 발급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직접 출력 및 우편·팩스로 수령, 재단에 직접 방문 신청·수령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국내 의대 석사과정 입학 또는 의대 학사편입 가능여부 질의

질의 해외 의과 대학 졸업 후, 국내 의대 석사과정으로 입학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국내 의대 학부 과정에 편입이 가능한지요?

회신 2020-11-06(대학학사제도과)

- 국내 의과대학 석사과정 입학과 관련하여서는,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르면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입니다. 또한 대학(원)의 입학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되는 사항으로, 해당 대학으로 입학자격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의과대학 편입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발이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6 대학 졸업 이수학점이 차이나는 이유

질의 어떤 대학은 140학점 이수해야 졸업이고 어떤 대학은 130학점 이수해야 졸업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신 2020-04-16(대학학사제도과)

- 졸업과 관련하여서는 「고등교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각 대학은 고유한 설립목적과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학 특성에 맞게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졸업요구 학점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7 「고등교육법」에서 대학생의 범위 관련

질의 「고등교육법」에서 대학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29조(대학원)의 범주에 속한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도 대학생으로 포함되는지요? 다시 말해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한 사람도 포함되는지요?

회신 2020-07-24(대학학사제도과)

-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라 대학에는 대학원을 둘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대학원 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법령상 대학생을 정의하고 있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 재적 중인 학생을 대학생이라고 칭하고, 대학에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에 재적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원생이라고 칭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8 교사에 대한 학술논문 무료 이용 지원

질 의 모든 교사들이 쉽게 학술 논문을 검색할 수 있게 해주세요.

회 신 2020-08-11(학술진흥과)

- 학술논문의 무료 이용은 국내 학술논문의 공유·유통 현황을 감안할 때,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 RISS 서비스 기준(2020.6.30), 공공기관 등을 통해 수집·제공되어 무료로 제공이 가능한 논문은 약 27%(원문 156만 건)이나, 민간업체(누리미디어, 한국학술논문 등)를 통해 유료로 제공되는 논문은 약 75%(원문 410만건)에 달합니다.
- 유료로 제공되는 논문의 경우, 저자가 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하고 학회가 이를 민간업체에 양도한 상태로 “별도의 구독료 지원 없이는” 대학 소속 이용자 외, 논문의 무료 이용을 지원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독료 지원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예산과 이를 위한 우선순위 배정에는 사회적 합의 또한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국내 학술유관기관(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과의 무료 논문 연계 확대 및 학회들의 논문 OA(Open Access, 무료 전자자료) 전환 운동 등의 지원을 통해 많은 이용자들이 국내외 학술자료를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우수한 국내·외 학술논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 비대면 수업 운영에 따른 대학 등록금 반환

질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학의 비대면 수업운영 및 학교시설물 미이용 등을 고려한 등록금 일부 반환 필요

회신 2021-10-13(대학재정장학과)

- 등록금의 책정 및 감면은 「고등교육법」 제11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 다만,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의 등록금 및 교육의 질과 관련한 학생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난해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위원의 참여를 강화하고, 재난으로 인한 등록금 감면 시 그 규모를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수업 운영 등에 따른 등록금 감면 및 반환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각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학생과의 민주적인 소통을 통해 정해야하는 사항입니다.
- 또한, 원격수업으로 인한 대학생의 학습결손을 예방하고 원활한 학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 70%의 백신 1차 접종완료 시기를 기점으로 학내 대면활동을 확대하고, 대학의 철저한 방역을 통해 실험·실습·실기· 소규모 수업 등을 확대 하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대학의 원격수업 수준 향상 및 운영관리에 학생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별 원격수업관리위원회에 학생위원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으며, 대학이 양질의 비대면 수업 콘텐츠 및 자료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0 대학 자퇴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기준 관련

질 의 대학에서 자퇴한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이 궁금합니다.

회 신 2021-10-12(대학재정장학과)

-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 및 동 규칙 별표 등록금 반환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에 따른 등록금 반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5.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 아울러, 등록금 반환금액은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하나,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은 학기개시일과 반환사유 발생시점을 비교하여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11 등록금 반환 청구 소멸시효 관련

질 의 과거 등록금 납부 후 자퇴하여 등록금 반환금액이 발생한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

회 신 2021-8-10(대학재정장학과)

- 대학 등록금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학기개시일과 반환사유 발생일을 비교하여 반환금액을 산정하여 이뤄지는 사항이며, 반환사유 발생시점이 학기 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인지에 따라 반환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등록금 반환 청구일이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오랜 시일 경과한 경우 국·공립대학은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른 소멸시효(5년), 사립대학은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에 따른 소멸시효(10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2 대학별 첨단학과 신설로 인한 편입 관련 문의

질 의 첨단학과 신설 시 활용한 편입학 여석에 비해 일반편입학 여석이 부족할 경우, 정원 외 특별전형 선발인원을 감축해야하는데, 어떤 전형에서 감축해야 되나요?

회 신 2021-10-25(고등교육정책과)

- 귀하께서는 편입학 여석을 활용하여 첨단학과를 신설하였으나 일반편입학 여석이 첨단학과 신설에 활용한 여석보다 부족할 경우, 정원외 선발인원을 감축하는 전형의 범위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첨단(실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제3조제1항제2호에 “이 경우 차년도에 신입학정원 대비 편입학 활용여석 부족 시 부족여석 수만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정원외 특별전형 선발인원에서 감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후단에는 “이 경우 제2호, 제3호, 제8호, 제9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정원제한이 없는 전형이 아닌, [별표 1]의 기준을 따르는 제2호, 제3호, 제8호, 제9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4호 전형에서 선발인원을 감축하면 됩니다.

13 대학정원조정 관련

질의 모집단위 명칭만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제4항에 따른 교원확보율 기준을 적용 받나요?

회신 2021-02-24(고등교육정책과)

- 각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및 총 입학정원 변동 없이 단순히 모집단위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 제4항의 적용을 받지 않겠으나, 명칭변경과 더불어 교육과정 등 모집단위 세부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 자체조정 사항으로 보아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4 모집단위가 없는 연계·융합학과 설치에 관한 질의

질의 모집단위가 없는 연계·융합학과 전과와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었나요?

회신 2020-12-29(고등교육정책과)

- 모집단위와 관계없는 연계·융합학과 전과 등에 대한 다른 법령 등 개정사항은 없으며, 대학의 전과 등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에 따라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5 대학교육 경비 고지 및 납입 관련

질의 등록금 및 학생회비 통합 고지 건의

회신 2020-09-14(대학재정장학과)

- 대학에서는 등록금과 그 외 선택적 경비(기숙사비, 학생회비)를 등록금 고지서에 등록금과 함께 기재하여 수납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선택 납부할 수 있는 비용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경비로 오인하여 납부하는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고, 개선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이러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학생회비 등 선택적 경비를 등록금 고지서에 통합 고지하지 않도록 대학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등록금 및 학생회비 통합 고지는 학생의 등록금 납부에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지양하고 있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대학 자퇴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금액 문의

질 의 대학 등록금 반환 기준 문의

회 신 2020-09-01(대학재정장학과)

-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같은 규칙 별표 「등록금 반환기준」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에 따른 등록금 반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또한 반환금액은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하나,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은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반환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 학기 개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17 대학교 현장실습 실습생 수당 회계처리 문의

질 의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의 성격에 대하여 2021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과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서로 상충함에 따라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문의

회 신 2021-09-24(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산학협력법」 제11조의3(현장실습 운영),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직업계고 현장실습 매뉴얼」의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4조제4항·제5항에 따른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3,2021.3.9), 이는 수업의 요건을 갖춘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의 현장실습지원비는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닌 것(과세 제외*)으로 해석되어집니다.

  *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에 의해 과세대상의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등에서 과세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세에서 제외됨

18 현장실습 학점인정 여부 관련 문의

질 의 입학하기 전 전공 관련 산업체에서의 재직 경력 등에 대해서 현장실습 학점 인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회 신 2021-08-12(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 대학생 현장실습이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의 하나이며, 학교에서 발굴한 실습기관에서 수업의 요건*을 갖추어 진행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이므로, 입학하기 전 전공 관련 산업체에서의 재직 경력 등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주도하는 교육과정(수업)으로서의 대학생 현장실습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① 교육과정 편성, ② 교과목 개설, ③ 수강신청, 등록절차, ④ 이수, ⑤ 점검, ⑥ 출결사항 확인 및 평가, ⑦ 학점부여

- 다만, 학교에 따라서는 학칙에 근거를 두고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산업체 근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9 유치원 원장 계약학과 입학자격 관련

질 의 근로자가 아닌 대표자인 경우에도 계약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회 신 2021-11-11(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재교육형 계약학과)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률에 의할 때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업체 등의 소속직원에 대해 입학자격이 주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통상 소속 직원이라 함은 법제상 또는 편제상 특정의 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의 임용 및 지휘감독의 대상이 되는 인적 대상을 의미하므로 산업체 등의 대표자는 소속 직원에 포함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총괄과-3694, '15.9.18). 다만, 조직의 임용 및 지휘감독의 대상이 되고, 사업소득세 납부실적이 없이 근로소득세만을 납부하는 고용된 대표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입학자격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현장실습생의 유급 휴일 관련

질 의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8조제4항의 유급휴일 보장과 관련하여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의 해석 요청

회 신 2021-10-25(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18조제4항* 유급휴일 관련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과 동일하게 1개월 만근(개근) 시 1일 발생합니다.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18조(학생 보호) ④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생략)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과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다만, 대법원 판결(2021다227100,'21.10.14.)*에 따라 마지막 달을 개근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유급휴가는 1개월 현장실습을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6개월('21.9.1.~'22.2.28)을 개근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였을 경우, 5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합니다.

  * 대법원 판결(2021다227100, '21.10.14.) 연차사용 권리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 아울러, 유급휴가 부여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상충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동 행정해석의 변경을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실-3821)-소정 근로를 마치고, 그 다음 퇴직한 경우에도 발생한 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 지급

21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관련

질 의 대학 소속 교직원 심사수당 지급

회 신 2020-12-12(국립대학정책과)

-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에 따라 심사수당은 '운영수당(210-02목)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은 자기소관 사무 및 자기가 소속된 대학의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하며, 여기서 '자기가 소속된 대학'이란 대학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해당 대학의 행사 심사위원으로 소속 전임교원이 위촉된 경우 심사수당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2 대학 개방형이사 연임

질 의 개방이사 중임 가능 여부

회 신 2020-01-20(사립대학정책과)

- 「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에 의거하여 개방이사의 경우 중임이 가능하며, 개방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습니다.

※ 사립학교법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③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3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

질의

- 사립대학에서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서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중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교비로(나머지 50%는 국가보조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직장어린이집에 정원 여유가 있어 학교가 위치한 해당구청에서 지역 주민의 자녀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의 자녀를 원아로 받을 경우, 학교에서 교비로 지급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가 학교 구성원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학교와 관련없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교비회계의 세출 항목에 위반됨은 없는지요?

회신 2020-01-06(사립대학정책과)

- 지역 주민 자녀의 추가 수용으로 인해 교비회계에서 추가 부담분이 발생한다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대학직원의 겸임교수, 시간강사 가능여부

질의 대학직원이 박사학위 취득후 현재 재직중인 대학에서 겸임교수나 시간강사로 겸직이 가능한지요?

회신 2020-01-23(사립대학정책과)

-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직원의 복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학교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사립학교법」 제70조의2). 따라서 사립대학 직원의 겸직 가능 여부는 대학의 내부 복무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전화민원

25 지역인재 선발 관련

질의 울산 지역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학생이 부산에 있는 00대학교의 의대를 지원할 경우에도 지역인재 선발에 해당되는지?

회신 2021년 전화문의(지역혁신대학지원과)

- 울산 지역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학생이 부산에 있는 00대학교 의대에 지역인재전형으로 지원할 수는 있으나, 00대학교 의대에서 학생 입학비율 40% 모두를 부산지역 학생만을 100%로 선발 할 수도 있습니다.
- 부산·울산·경남권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어떻게 선발할지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선발 기준은 추후 00대학교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6 재수생의 지방 의대 지역인재 선발 관련

질 의 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2021년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대학을 재수할 경우도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회 신 2021년 전화문의(지역혁신대학지원과)

- 2021년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대입에서 재수를 할 경우 법률상 지역인재전형 대상에 해당은 되지 않지만, 그 때 가서 학생을 어떤 방식으로 선발할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해당 대학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27 검정고시자의 지방 의대 지역인재 선발 자격 여부

질 의 최근 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지방 소재 의대에 지역인재 40%를 의무적으로 선발을 한다고 하는데, 해당 지역에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요?

회 신 2021년 전화문의(지역혁신대학지원과)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서는 지역인재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①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을 선발할 수 있다.

- 따라서, 고등학교 검정고시의 경우, 지방대학 의대계열 지역인재 선발과 관련하여 현행 및 개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인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8 출신 학교와 권역이 다른 지역 의대 지역인재선발 자격

질의 인터넷을 보니 현재 초등학생부터 지방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할 경우 의대에 특별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지방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충남 천안에서 중·고교를 졸업하고 전북소재 의대에 지역인재선발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요?

회신 2021년 전화문의(지역혁신대학지원과)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합니다. 비수도권 소재 의대의 지역인재선발에 지원이 가능하나 권역을 달리하여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충남 천안에서 중·고교를 졸업했을 경우 충청권 소재 의대에 한해 지역인재선발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29 「대학 설립·운영 규정」 [별표 2]의 세부 부속 시설의 종류

질의 「대학 설립·운영 규정」 [별표 2]의 비고란을 보면, '대학 학부(과)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세부 부속 시설의 종류는 교육부 장관이 고시로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따로 정하고 있는 고시가 있는지 있다면 해당 고시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신 2021년 전화문의(사립대학정책과)

- 관련하여 현재 고시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30 조기취업자의 학교 시험(중간고사, 기말고사) 관련

질 의 조기취업을 했는데 교수님이 학교에 나와서 중간고사 시험을 보라고 하는데, 재직중인 회사에서는 곤란하다고 할 경우에도 꼭 학교를 나가서 중간고사를 봐야 하는지요?

회 신 2021년 전화문의(대학학사제도과)

- 교육부는 각급 대학이 취업한 학생에게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기 중 취업한 학생의 교육과정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출석 기준 등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에 취업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조기취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 조기취업은 졸업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조기취업을 했지만 실제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취업 후에도 졸업 요건과 수강을 신청했던 과목과 관련하여 출석, 시험 등에 관해 대학으로 꾸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1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소득 분위 관련

질 의 로스쿨 장학금이 있는데 학교에서 4분위이기 때문에 나는 로스쿨 장학금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관련 기사를 보면 소득 4구간일 경우에는 등록금 90%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학교의 안내가 맞나요?

회 신 2021년 전화문의(대학학사제도과)

- 로스쿨 장학금의 지원순위를 1순위부터 5순위까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등록금 100% 이상을 2순위는 소득 4구간으로 등록금 90%이상을, 3순위는 소득 5구간으로 등록금 80% 이상, 4순위는 소득 6구간 등록금 70% 이상, 5순위는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원칙에 맞도록 장학금 지급기준과 지급금액을 대학이 규정으로 마련하여 시행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등록금 100% 이상을 지원하는 1순위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1구간, 2구간, 3구간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의 재원은 국고 및 대학의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반드시 로스쿨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5순위의 경우에는 대학의 자체 재원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의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로스쿨장학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2 대학 폐교 시 특별편입학 관련

질의 4년제인 OO대학교가 폐교된다는 말이 있는데, 만약 학교가 폐교되면 재학생들은 인근대학으로 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인근 대학 중 내가 원하는 대학의 원하는 학과로 무조건 편입학을 시켜준다는 건가요?

회신 2021년 전화문의(대학학사제도과)

- 폐교대학의 재적생은 별도 정원을 인정하여 인근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전공)의 동일 학년으로 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 정원 내에서 편입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별도 정원보다 지원자가 많다면 경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쟁에서 밀리더라도 인근 다른 대학의 동일·유사학과로의 편입학을 보장하고 있으나 세부사항은 학교가 폐교된다면 학교 폐교 후 인근 대학들과의 협의 후 수립되는 특별편입학 계획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3 2022년 확대 시행 예정 셋째자녀(다자녀) 국가장학금 관련

질의 내년에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는데 다자녀, 셋째아 이상 자녀의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기준에 소득 정도가 반영된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자녀가 셋으로 첫째와 둘째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셋째가 대학을 들어가는데 첫째와 둘째가 미혼이라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을 경우에 영향을 미치는지?

회신 2021년 전화문의(대학재정장학과)

- 주민등록상 한 가구에 같이 있는 형제·자매가 일정 소득이 있든 없든 대상 학생 본인이 미혼이라면 가구원 구성에는 부모와 대상 학생 본인만 해당됩니다. 단, 대상 학생 본인이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가구 구성원에 학생 본인과 배우자만 반영됩니다.

34 셋째아 이상 대학 국가장학금, 자녀 수 관련

질의 내년부터 셋째아이 이상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자녀가 셋이었으나 그 중 한 명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사망한 자녀도 셋째아 이상(다자녀)에 포함을 하는지요?

회신 2021년 전화문의(대학재정장학과)

- 다자녀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므로 안타깝지만 셋째아에 대한 자녀수에서 사망한 자녀는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35 재교육형 계약학과 합격자의 정시모집 지원 가능 여부

질의 수시모집에서 계약학과에 합격한 사람이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 지원이 가능한지?

회신 2021년 전화문의(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 재교육형 계약학과는「고등교육법」제34조의 입학전형실시에 대한 사항을 따르지 않아 수시모집기간, 정시모집기간 등 대학입학전형 일정이나 복수지원금지 등에 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 1년에 두 번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반면,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고등교육법」제34조 입학전형실시에 대한 사항을 따라야 하므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수시모집에 합격했다면 정시모집에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36 재교육형 계약학과 입학자격 관련

질 의 박사과정의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입학을 준비 중으로, 입학자격을 보니 “입학일 기준 계약을 맺은 산업체 등에서 10개월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산업체에서 8개월 재직을 하다가 3개월 정도 쉬고 복직하여 6개월을 근무하였는데 이렇게 연속하여 10개월 이상을 재직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10개월 이상의 재직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 신 2021년 전화문의(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 교육부 고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에서는 재직경력 10개월에 연속/비연속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학일 기준으로 계약된 산업체에서의 총 재직경력 10개월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입학자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37 대학생 현장실습 실습지원비 관련

질의 최근 뉴스를 통해 정부에서는 7월부터 대학생의 현장실습지원비를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했었고, 마침 교육부에서도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7/23에 실습지원비로 40만원을 받았다.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21년 전화문의(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 개정된 교육부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이 21.07.06에 고시되어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규정에 따라 대학생 현장실습 실습기관은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해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시간급 최저임금(21년 기준 8750원)의 75/100(21년 기준 6540원)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개정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은 실습기관과 대학이 개정 고시일 21.07.06 이후에 계약된 것부터 적용을 하며 개정 고시일 이전에 계약된 것에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에는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무급운영을 허용하며,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에는 75/100 이하로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실습지원비를 결정합니다.
- 따라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중 참여하고 있는 현장실습이 어떤 것인지? 만약 "표준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고 있다면 21.07.06 이전에 계약된 것인지, 이후에 계약된 것인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8 제주도 내 대학교의 대학인가 관련

질의 정부24에서 제주도 소재 OO대학교의 대학인가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대학교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회신 2021년 전화문의(전문대학정책과)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 제1항에 의거 국가 외의 자가 대학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내 국립대학이 아닌 (전문)대학의 대학인가확인서는 제주도청으로 별도로 요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 문의 : 제주도청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064-710-3893)

39 폐교된 기능대학교(폴리텍대학교)의 교육제증명 발급

질의 00기능대학교를 졸업하였는데 해당 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정부24에서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했으나 학교명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졸업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회신 2021년 전화문의(전문대학정책과)

- '기능대학교(폴리텍대학교)의 교육제증명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에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인터넷 증명발급 메뉴〉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메인화면 - 좌측 상단의 인터넷증명발급" 이용
  폐교된 캠퍼스의 기능대학 학적(교육제증명 발급 등)은 권역 대학 교학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 기능대학〉		〈권역 대학〉
제천캠퍼스	→	4대학(대전캠퍼스)
고창캠퍼스, 인재원	→	5대학(광주캠퍼스)
김천캠퍼스	→	6대학(대구캠퍼스)
거창캠퍼스	→	7대학(창원캠퍼스)

40 전문대학 부설학교 개설 가능 여부

질 의

「고등교육법」 제45조를 보니 재학생의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학교를 부설할 수 있어 교육대학에는 초등학교를, 사범대학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종합교원 양성 대학에는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문대학에는 부설학교를 둘 수 없나요? 전문대학도 부설학교를 두고 있다면 그 학교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회 신

2021년 전화문의(전문대학지원과)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 「고등교육법」 제51조의2(유치원 부설)에 따라 전문대학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양성을 위한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치원을 부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 교사 양성을 위한 해당과가 개설된 전문대학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의 유치원 부설 현황은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 알림·서비스 - 자료실 '2021년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주소록'의 제목으로 된 엑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 전문대학 전과 관련

질의 전문대학의 3년제 학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2년제 학과로의 전과가 가능한가요?

회신 2021년 전화문의(전문대학지원과)

- 3년제 학과에서 2년제 학과로의 전과는 대학이 정한 시기, 범위, 요건, 학점 인정 등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과는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소속 대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2 전문대 4년제 간호학과 졸업 시 대학원 진학 가능 여부

질의 전문대학에도 간호학과가 4년제가 있는데 전문대학에 있는 4년제 간호학과를 졸업했을 때도 학사학위를 주는지? 학사편입 같은 거 하지 않고 바로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건가요?

회신 2021년 전화문의(전문대학정책과)

- 2011.5.19.자 「고등교육법」 제50조의3 개정에 따라 전문대학내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는 전문대학내에서 4년제 대학과 같이 4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학과입니다.
- 또한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라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입학할 수 있습니다. 이외 대학원 입학자격요건은 각 대학에서 정하는 것으로 관심이 있는 대학(대학원 과정)의 입학관리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3 산업체 위탁교육, 산업체 재직증명 관련

질의 전문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생을 준비 중입니다. 대학에서 산업체에 9개월 이상 재직 중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4대 보험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저의 경우 직장을 다니는 중에 의료수급권자가 되어서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는 것은 없었는데 대학에서는 직접 납입했다는 내역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신 2021년 전화문의(전문대학지원과)

- 대학은 재직자의 4대 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에 해당하는 4가지 가입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산업체 재직 사실을 확인해야 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해당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는 대체 서류 제출로 증명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따라서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0원으로, 이러한 사실을 대학에 충분히 전달하는 등 대체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학 인사·복무

44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복수의 석사학위 경력인정 관련 질의

질의 교육공무원(대학 교원) 경력환산 시 대학원에서 학위취득 경력을 10할로 계산하고 있는데, 수학기간을 달리하는 동등학위 취득 경력 또한 10할로 계산하여 중복인정이 가능한가요?

회신 2020-01-30(고등교육정책과)

-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과 관련하여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및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서는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수업연한으로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을 인정(박사학위 취득 시에는 3년의 범위에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교육인적지원부, 2008)」에서는 석·박사 학위 취득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학위는 담당과목과 동일계열일 필요는 없으며, 2개 이상의 석사학위 취득시 각각의 기간에 대해서 연구경력으로 10할 인정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령계산과 별개)

45 「사립학교법 시행령」상 교원징계위원회 운영 관련

질 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제2호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독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요?

회 신 2020-07-08(고등교육정책과)

- 「사립학교법」 제25조의2(징계기준) 제2항에서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위행위자 뿐만 아니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한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 2호에서는 의결 대상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고등교육법」 제19조(학교의 조직) 제1항에서는 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2항에서는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가 누구인지는, 국립대학의 경우 대통령령과 학칙에 따라,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에 따라,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 아울러, 「사립학교법」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는 사립학교의 교원 징계사건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것으로, 직원의 경우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6 국립대학 교육공무원 조교의 복무 관련 질의

질의 국립대학 공무원 조교의 업무가 매주 토요일마다 상시적으로 있을 경우, 근무일을 조정하여 정상근무일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지정하고, 일요일과 월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을까요?

회신 2020-09-02(고등교육정책과)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라, 주말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대체휴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소속 대학 복무관련 담당자와 문의하셔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7 전공대학 졸업 이후, 대학 출강(강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 전공대학(전문학사)을 졸업하고, 사이버평생교육원의 인터넷 강의를 수료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대학강사로 임용될 수 있나요?

회신 2020-05-07(고등교육정책과)

- 「평생교육법」 제34조(전공대학) 및 제33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할 경우 공개임용을 거쳐 대학 강사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48 국립대학에서 임용한 강사를 교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 국립대학에서 임용한 강사는 그 대학의 교직원으로 볼 수 있나요?

회신 2020-08-03(고등교육정책과)

- 「고등교육법(강사법)」 제14조에 따라 강사는 「고등교육법」의 교원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동법 제14조의2에 따라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9 대학 강사 임용 시기에 대한 문의

질 의 강사의 임용을 총장에게 위임하고 있지 않아 이사회 의결과 이사장의 임용이 필요하여, 적합자 또는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할 경우에 9.1일 이후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재공고 할 경우 학기 개시일 이후 공개임용 절차가 완료될 것이 명확할 경우 학과장의 추천으로 강사를 임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회 신 2020-08-27(고등교육정책과)

- 강사임용 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 강사 임용 절차 및 이사회 소집 절차 등을 감안하여 강사 임용 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학생의 수업권 등을 고려하여 학기 시작 전 강사 임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 학기 개시 이후 계약 체결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용계약 체결 전에는 강사의 강의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1년이상 계약체결해야 합니다.

- 또한 강사의 지원자(적합자)가 없을 경우, 아래의 단계로 임용하여야 합니다.
  ① 공고기간을 단축하는 등 하여 재공고
  ② 학기 개시 전 30일 이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자가 포기한 경우를 준용하여 해당과목 강의가 가능한 기 임용된 강사에게 주당 9시간 범위 내에서 강의를 부여
  ③ 학칙(정관)에서 정한 방식으로 임용 가능하나, 인사 위원회 검증 등 임용절차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50 「고등교육법(강사법)」에 따른 과목 배정에 대한 문의

질 의 전임교원이 A반의 가, 나 과목을, 강사가 B반의 가, 나 과목을 교수하고 있을 때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전임교원이 가 과목(A, B반모두), 강사가 나과목(A, B반모두)을 교수하는 것으로 변경할 때 강사법 위반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회 신 2020-08-28(고등교육정책과)

- 「고등교육법(강사법)」은 강사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교수 과목 배정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참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은 소청심사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민원

51 대학 강사의 퇴직금 관련

질의 대학 시간 강사의 퇴직금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주당 몇 시간 이상 수업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21년 전화문의(고등교육정책과)

- 강사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강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강사의 사용자인 대학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선택하여 설정하여야 합니다.
- 강사의 퇴직금은 「강사법(고등교육법)」으로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것으로, 강사의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 방식은 대학에서 설정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대학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입제도 전화민원

52 재직자 특별전형 관련

질의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2022학년도 대입을 준비 중인데, 재직자특별전형 시에도 학생부 제도변화에 따른 블라인드 처리, 수상실적 학기별 1개만 반영 등이 적용되는지?

회신 2021년 전화문의(대입정책과)

- 재직자특별전형이 학생부종합전형 내에서 이뤄지는 전형이면 적용됩니다. 즉, 학생부 종합전형 형태로 운영하는 전형이라면 모든 전형에 적용이 됩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대학의 입학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V

평생교육

평생교육

1 독서실 교습비 반환기준 관련 질의

질의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별표 4] 관련 독서실의 교습비 반환기준에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여 반환금액을 산정하게 되어있으나, 포기한 날까지 포함한 것이 규정에 맞는 건가요?

회신 2020-07-13(평생학습정책과)

- 「학원법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제3항에 의거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서 독서실의 학습장소 사용후 반환금액의 계산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반환금액의 계산은 민원인께서 독서실 사용을 포기로 요청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학원 교습비 반환 합의 적법 여부

질의 「학원법 시행령」의 반환규정과 관련하여 학원과 학생사이에 별도로 교습비 반환에 관한 합의가 적법한 건가요?

회신 2020-01-23(평생학습정책과)

-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관련 교습비등 반환기준은 [별표 4]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다른 합의의 경우에는 학원 수강생(학습자)에게 유리하게 합의된 경우에만 허용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학원과 유해업소의 거리 제한 관련 질의

질의 연면적 1,650㎡ 이상의 건축물에서 학원이 4층, 유해업소가 3층에 있는 경우에, 「학원법」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5항 제2호의 수평거리 6m 거리 측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회신 2020-03-02(평생학습정책과)

- '학원과 유해업소의 거리 측정'은 유해업소를 4층으로 수직 이동한 것으로 가정하여 유해업소와 학원 간의 수평거리가 6m 밖에 있는 경우에 설립·운영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원 등록에 대한 권한은 소재지 교육지원청에 있으며 현장실사 등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더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립대 강사 학원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문의

질의 국립대 강사로 재직중입니다. 학원 사업을 병행하고 싶은데, 강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학원 사업자로 동시에 등록하여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회신 2019-12-04(평생학습정책과)

- 대학의 강사의 경우 영리행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학원법」 제3조에 따라 대학의 강사의 경우 '교원'의 지위를 부여함에도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대학의 강사가 「학원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설학원을 개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

5 보습학원 유아대상 교습과정 운영 가능 여부 질의

질의 보습학원에서 유치부(유아:만3~7세) 교습과정 등록 및 교습행위가 가능한가요?

회신 2019-12-10(평생학습정책과)

- 현행, 「학원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유아,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분류하면서 교습과목만 또는 대상을 포함한 교습과목으로 정의하고 있어 '입시·검정 및 보습분야' 보통교과 계열의 교습과정을 초·중·고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교습학원 교습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실제,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교습과정 중 대상을 별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 예능, 기타 분야의 학원에 유아들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모든 분야 학원에서 유아 대상 교습이 가능합니다.

6 학원의 등록가능한 교습과정 질의

질 의 법학과 관련된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사설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회 신 2020-01-10(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제2항에 의거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2]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에는 평생직업교육학원 〉 인문사회, 자연 〉 인문사회, 자연 〉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 고시의 교습과정이 있습니다.
- 말씀하시는 '법학 관련 내용'은 이와 유사한 교습과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자세한 사항은 「학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교육청에서 학원 등록을 담당하고 있어 학원을 설립하시고자 하는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교습소 교습자 변경 관련 근거

질의 「학원법」상에서 교습소의 교습자(운영자)를 변경하려면, 교습소를 폐소 후 그 장소에 새로 교습소를 설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교습자의 인적사항의 범위에 현재 운영중인 교습자가 아닌, 인수인계를 받은 다른 교습자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20-10-05(평생학습정책과)

- 「학원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습자의 인적사항 변경의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교습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및 변경의 권한이 있는 소재지 교육지원청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 학원 강사등록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 내국인으로 외국 대학 휴학 중입니다. 학원 강사등록이 가능할까요? 등록이 가능하다면 성적증명서나 수료증(수료증명서)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하는지요?

회신 2020-11-05(평생학습정책과)

- 「학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 3]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제2호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 대학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내국인 강사 채용 관련 서류는 학원 등록 권한이 있는 각 시도교육청의 조례 및 규칙, 관련 지침에 의해 규정하고 있고, 학원 등록 관련 권한은 소재지 교육지원청에 있어 학원 강사 채용 및 관련서류는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학원 미사용 시간에 공간 임대 활용 가능 여부 질의

질 의 교습학원이나 음악학원에서 오전 미사용 시간에 공간 임대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세법 또는 교육관련법 상의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회 신 2020-04-20(평생학습정책과)

- 공간 임대 등 추가 사업자등록 및 세법과 관련하여서는 「학원법」의 소관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원법」 관련 법령 및 시·도 조례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된 학원의 시설 내에서 다른 사업의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세부적인 판단에 대하여는 「학원법」에 따라 학원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세부사항을 확인하여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민원

10 학교 밖 청소년의 EBS교재 무상지원 대상 여부

질의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보니 저소득층 고교생에게 지원하던 EBS수능 교재를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원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검정고시 준비생들도 EBS수능 교재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회신 2021년 전화문의(이러닝과)

-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고교 학습 지원을 2004년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EBS)무상 교재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원격·등교 수업의 병행이 장기화되면서 저소득층 학생, 학업중단 학생 등에게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기초생활 수급권자(생계·의료·교육) 가정의 고교 재학생뿐 아니라 검정고시 준비생, 재택교육(홈스쿨링) 학생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교재는 학생 개인이 EBSi 누리집(www.ebsi.co.kr)을 통해 개별 접수하여 가정으로 배송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지식샘터에서 강의 시 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질의 현직 교원이 지식샘터(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케리스 주관)에서 강의를 할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21년 전화문의(이러닝과)

- 지식샘터의 지식샘 활동을 희망하는 초·중·등 교원의 교과 과정을 검증한 후 강사로 등록되어 강의를 한다면 외부강의 신고대상입니다. 지식샘터에서 강의 시 그 사례금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원이 지심샘터에서 강의 시 외부강의 신고 대상입니다.

12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대상에 외국인도 포함하는지 여부

질의 평생교육 바우처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찾아보니, 평생교육 바우처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2002.1.1. 이전 출생자) 성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원)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서 외국인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합니다. 외국인은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나요?

회신 2021년(평생학습정책과)

- 교육부 발표의 보도자료에는 국적에 따른 지원 대상을 안내하고 있지는 않지만 평생교육 바우처는 내국인만 지원합니다. 외국인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13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 관련

질 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 교육과정을 변경할 때에도 교육부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회 신 2021년 전화문의(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법」 제30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4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보고)에 따라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운영규칙, 교육과정(과정명, 교육대상, 학습기간, 학습비 등 포함) 등이 변경할 경우 해당 내용과 운영규칙을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14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관련

질의 대학에서 캠프를 운영하곤 하는데 누구는 불법이라고 하고, 누구는 예외적으로 국가기관하고 방학 때만 운영하면 가능하다고도 하는데 어떤 게 맞나요?

회신 2021년 전화문의(평생학습정책과)

- 교육부는 2014년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대학과 시도교육청에 안내를 한 바 있으며 운영 허용 및 조건 운영내용, 운영기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운영방식) 국가·지자체·교육청이 학교에 위탁(협정약정)을 통해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 위탁기관의 장과 운영 기관의 장이 협정을 체결하되, 위탁기관 의 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직접 학생을 모집 운영

  ※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은 비영리 또는 교육기부 등의 목적으로 참여가능(협력기관의 참여)
  ※ 위탁기관이 지역에 관계없이 수탁기관(학교)을 결정하여 위탁 가능
  ※ 사인(민간업체, 학원)이 대학 등 학교시설을 임대하여 어학캠프 등을 운영하는 것은 학원법 위반으로 금지 및 고발

  △ 위탁기관 : 국가, 지자체(광역, 기초), 교육청(시도, 지원청)의 장
  △ 운영기관 : 위탁받은 학교의 장
  - 운영가능 학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 미인가 학교, 유치원 등 운영 불가

  • (운영내용) 외국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 중심의 캠프운영을 원칙적으로 하되, 학교 교과를 변형한 수업을 실시하는 입시준비과정은 불가

  ※ 학교 교과를 변형한 입시준비 등의 과정 운영 불가(예:토익, SAT, 문제 풀이 등)

  • (운영기간) 개별 학교의 방학기간에 한하며 본교생의 학교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 이 외의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교육청으로 문의 필요

직업교육 전화민원

15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 수당 관련

질의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장실습 수당을 시간당 7,400원 이상 지급하라고 하는데 이게 강제사항인지요?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지급을 할 수 있는지요?

회신 2021년 전화문의(직업교육정책과)

- 7,400원 이상 권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향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하향 조정하여 지급을 할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보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16 직업계 고교 현장실습 수당액(금액) 근거 관련

질 의 기업입니다.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에게 시간급 7,40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은 확인을 했는데, 지급하는 금액의 근거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처벌이 주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 신 2021년 전화문의(직업교육정책과)

- 직업계고교 현장실습 수당은 「최저임금법」 제5조의(최저임금)에 따른 월 최저임금 상당액의 70% 이상이 적절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이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70%는 일 경험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 현장실습 수당 7,400원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8,720원×6일×7시간=366,240(주휴수당 포함한 근로자 1주일 기준)
  ② 366,240원×70%=256,368(최저임금의 70%)
  ③ 7,300원×5일×7시간=255,500원
  ④ 7,400원×5일×5일×7시간=259,000원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제1항, 제3항과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제13조에서 현장실습 수당 지급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7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참여하는 학습기업 증명 관련

질 의 특성화고교 교사입니다. 당해 학교가 도제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도제기업체들을 보니 하이파이브(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에 선도기업들로 인정받아 등록이 돼 있던데, 특정기업이 도제기업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회 신 2021년 전화문의(직업교육정책과)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기업의 학습기업지정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기업지정서 발급 업무는 관할 지역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서 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VI

기 타

기 타

1 교원의 외부 강의 시 사례금 상한액 관련

질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일반 회사의 직원들이 수련회를 갖는데 강의를 해 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교원이 외부강의를 하려고 할 때에 사례금 관련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인 것인지? 사례금은 얼마인지 등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회신 2021년 전화문의(반부패청렴담당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나. 법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라목'에 따른 공직자 등은 각급 학교의 장,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으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 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합니다.

2 외부 강의 신고 관련

질 의 국립대학교 조교입니다. 외부강의 신고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단체일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 신 2021년 전화문의(반부패청렴담당관)

- 「2021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공무원의 외부 강의 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에 해당
2)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 등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에 해당

► 단,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국·공립대학교나 국·공립대학교병원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3 대학의 학적 보존 기간

질의 두 개의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그 중 한 곳의 대학을 다녔다는 기록은 삭제하고 싶어 대학에 전화를 했더니 대학에서 모르겠다며 교육부로 문의를 하라고 합니다.

회신 2021년 전화문의(운영지원과)

- 학적부는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빙하는 기록물 중 하나로 관리대상 사망 등의 사유로 관리기간이 소멸되기 전까지 보존하여야 하며 사망 후에도 각종 증빙기록으로 활용되므로 준영구 보존해야 합니다.

4 재외한국학교 졸업자의 학생부 등 교육제증명 발급 관련

질의 베트남의 하노이재외한국학교의 관할 교육청이 어디인가요? 하노이재외한국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정부24에서 학생부를 발급하려고 하니, 관할 교육청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신 2021년 전화문의(재외동포교육담당관)

- 재외한국학교는 교육제증명 발급 기능의 나이스시스템과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24를 통해 교육제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외한국학교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학적서류 발급은 현지 학교로 팩스나 국제우편 등을 이용하시는 방법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반, 한글학교 개설 현황

질 의 외국의 외국학교 초중고에 한국어반이 개설된 현황과 한글학교 현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회 신 2021년 전화문의(재외동포교육담당관)

- 교육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20.11.05) '제18회 재외 한국어 교육자 국제 학술대회'의 붙임4]2019년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반 개설현황에서 국가별로 한국어반 개설 학교 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학교리스트에 대해서는 예산 관리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해당 한국교육원 및 대사관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글학교 현황과 관련해서는 지역 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관할 하므로 해당 지역의 공관으로 직접 문의하거나 외교부 재외동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VII

민원처리 관련 법령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민원처리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7515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 "처분"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을 말한다.
5.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6.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7.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8. "무인민원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3호가목의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36조제3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민원의 처리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및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의 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④ 행정기관의 장은 원래의 민원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기관을 통하여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법원의 재판사무·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를 본인의 민원 처리에 이용되도록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민원처리기관에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정부법」 제39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3. 「관세법」 제116조
4. 「지방세기본법」 제86조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6.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
7. 「주민등록법」 제30조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9. 「자동차관리법」 제69조
10. 「건축법」 제32조
11. 「상업등기법」 제21조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인이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종류를 보유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해당 행정정보의 위조·변조·훼손·유출 또는 오용·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⑥ 민원인은 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행정정보가 본인에 관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민원인의 본인 확인 방법
2.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3. 「주민등록법」 제35조제2호,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 「여권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신분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

⑦ 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정보가 위조·변조·훼손·유출 또는 오용·남용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대한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요구방법, 해당 행정정보의 제공방법·제공기준, 종류 및 그 세부유형, 수수료, 보안대책 및 실태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0. 20.]

제11조(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 및 접수·처리 과정에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에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민원인에게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교부하여야 할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교부의 절차 및 접수·처리·교부 기관 간 송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교부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교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접수·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처리방법 등

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공표)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할 때에는 접수기관·경유기관·협의기관(다른 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처분기관 등 각 기관별로 처리기간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18조(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질의민원·건의민원·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 ①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민원을 처리할 때 관계 기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의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 내에 그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신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부서가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연장사유·처리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를 요청한 민원 처리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①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連名簿)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공정·적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다수인관련민원의 효율적인 처리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민원심사관의 지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처리민원의 사후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절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결과를 허가서·신고필증·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절 법정민원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① 민원인은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가 청구된 법정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능한 것으로 통지한 민원의 내용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나중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복합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를 통하여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처리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제2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설치·운영
2. 제33조에 따른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3.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실무기구의 운영
4. 제3호의 실무기구의 심의결과에 대한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再審議)
5.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 결정

제33조(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통합전자민원창구”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민원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즉시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에 게시한 후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37조(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고시할 때에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과 구비서류를 줄이거나 처리절차·신청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가 조정·고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등을 지체 없이 개정·정비하여야 한다.

제38조(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9조(민원제도의 개선)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행정기관의 장과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그 민원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개선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선안을 제출·통보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 중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⑥ 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권고 받은 사항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40조(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①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회의는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 제39조제6항에 따른 심의요청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③ 조정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의 처리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소관 민원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2조(확인·점검·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과적인 민원행정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의 개선 상황과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평가 결과 민원의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43조(행정기관의 협조)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민원 관련 자료수집과 민원제도 개선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44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민원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여론 수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국민제안의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7515호, 2020. 10. 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민원처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22호, 2021. 10. 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인 및 공공기관의 범위)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행정기관이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가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3.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불명확한 자

② 법 제2조제3호나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제3조(민원인 등의 정보 보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정보 보호의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에게 연 1회 이상 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담당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담당자의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민원의 처리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민원의 접수) ① 민원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민원을 접수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기타민원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및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인 경우를 말한다.

1. 기타민원
2. 제5조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3.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4.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처리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소요기간, 필요한 현장확인 또는 조사 예정시기 등을 해당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신청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를 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인지 확인하거나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부수는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제7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① 민원인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정보의 종류, 접수하려는 민원 및 민원처리기관을 명시하여 민원접수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민원접수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전달받은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해당 민원처리기관에 본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 등으로 제3항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을 거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 및 그 사유를 민원접수기관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제3항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이 지연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 및 그 사유를 민원접수기관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알리고, 그 사유가 해소된 즉시 본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⑥ 법 제10조의2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이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을 말한다.

⑦ 법 제10조의2제3항 및 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본인정보의 종류 및 세부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신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본인정보
   가. 주민등록표 등 개인의 신원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인정보
   나. 병적증명서 등 개인의 경력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인정보
2. 등기사항증명서 등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지위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인정보

3.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이하 “개인등”이라 한다)의 자격의 증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본인정보
   가. 국가기술자격 증명 등 개인등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인정보
   나. 인가·허가 등 행정청의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인정보
4. 물건 또는 법률상의 권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본인정보
   가. 부동산등기부 또는 자동차등록증 등 부동산 또는 동산의 권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인정보
   나. 특허등록원부 등 법률상 등록 또는 등기된 권리의 내용에 관한 본인정보
5. 토지 등 특정한 물건이나 그 밖의 권리의 소재(所在)·형상 및 그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본인정보
   가. 지적도, 임야도 등 특정한 부동산의 소재, 그 현황 등에 대하여행정기관이 작성한 본인정보
   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특정한 물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또는 가치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작성한 정보로서 다른 개인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본인정보
6. 개인등의 행위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본인정보
   가. 출입국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등 개인의 소재 및 지위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본인정보
   나. 납세증명, 각종 등록확인증 등 개인등의 법령에 따른 행위의 존재 여부 및 법령상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인정보
7. 그 밖에 행정기관이 민원처리 등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본인정보

⑧ 본인정보를 제공받으려는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7항에 따라 암호화, 전산시스템 접근통제 및 접속기록관리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보안대책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7항에 따라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 민원처리기관의 장에게 점검항목·절차 및 시기 등을 미리 알려야 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⑪ 민원처리기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10. 5.]

제7조의3(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정기적 공동이용) ① 민원인이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할 때에는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본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본인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적인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한 민원인은 그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적 공동이용 및 철회의의 방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10. 5.]

제8조(다수 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3명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민원문서를 연명(連名)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 중에서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의 성격,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3명 이내의 범위에서 적절한 대표자 수를 민원인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로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 받은 3명 이상의 민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명 이상의 민원인 중 3명 이내를 대표자로 직접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민원의 민원인으로 본다.

제9조(민원실) ① 민원실의 장은 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용지·필기구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실 시설·환경 등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13조에 따른 민원편람(이하 "민원편람"이라 한다)을 열람(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을 포함한다)할 수 있도록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담당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민원편람을 비치하거나 컴퓨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편람에 민원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기관·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그 밖에 민원에 관한 안내에 필요한 사항(법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 종류를 정하여 민원실에 게시하거나 민원편람에 게재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할 수 있는 민원
2. 제5조에 따라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3. 제4항에 따라 민원인이 구술(口述)하고 담당자가 그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는 민원

④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로 접수하는 민원의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민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구술하고, 담당자가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민원인이 서명한 때에는 이를 민원문서로 접수할 수 있다.

제11조(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민원의 신청·접수, 민원문서의 이송 및 처리결과의 통지
2.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예정일 등 민원의 처리상황 안내
3. 법령, 민원편람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 등 민원 처리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보안 강화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
2.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새마을금고”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민원을 접수한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이하 이 조에서 “접수기관”이라 한다)는 그 민원을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에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민원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은 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이 교부받으려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이하 이 조에서 “교부기관”이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접수기관이 소관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민원과 관련한 신청서·구비서류 등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교부하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략하고 해당 기관의 관인을 찍어 민원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또는 그 민원의 성질상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 민원문서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인이 동시(같은 근무일에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동일한 증명서 등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는 제외한다)의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통마다 처리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⑥ 민원인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 업무처리비 등 추가비용을 교부기관에 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를 통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접수·교부 기관 및 추가비용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협이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협의하고, 새마을금고가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⑧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는 민원인이 소관 행정기관이 다른 둘 이상의 민원을 통합하여 신청했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접수·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6. 4.〉

⑨ 제8항에 따라 통합하여 접수된 민원은 그 민원의 소관 법령에 따라 각 소관 행정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통합하여 접수한 민원 중 다른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선행적으로 완결되어야 하는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선행 민원이 완결되는 데 걸린 기간은 다른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⑩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가 제8항에 따라 통합하여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접수·교부기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2019. 6. 4.〉

제13조(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 ①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문서 중 그 처리가 민원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1근무시간 이내에 이를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주무부서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1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할 수 있다.
② 같은 행정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을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문서를 이송받은 행정기관은 민원문서를 이송한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행정기관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민원문서가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문서의 이송 상황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처리방법 등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한 기타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原處分)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현장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⑤ 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 5.〉
⑥ 민원인은 제2항에 따른 감사부서 등의 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과 관련한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감독기관의 장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기관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감독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결과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존중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민원인은 고충민원을 신청하거나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6. 4.〉
[제목개정 2019. 6. 4.]

제18조(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 ① 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원의 접수를 보류·거부하거나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보낸 경우
2.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3. 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22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민원 처리와 관련 있는 직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민원 처리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이나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9. 6. 4.〉

제23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마다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의 처리진행상황 등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허가서·신고필증·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완료 예정일(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된 처리완료 예정일을 말한다)부터 15일이 지날 때까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고 해당 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26조(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결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다수인관련민원의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분석하여야 한다.

제28조(민원심사관의 업무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의 업무가 지나치게 많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임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 민원심사관의 업무를 나눠 맡도록 할 수 있다.

② 민원심사관(분임 민원심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직원을 말한다)에게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민원심사관은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

제29조(처리결과의 통지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의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타민원의 경우
2.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3. 민원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민원인이 그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본다. 〈개정 2016. 4. 26., 2017. 7. 26.〉

1. 삭제 〈2019. 6. 4.〉
2. 위조·변조 방지조치
3. 출력한 문서의 진위확인조치
4. 그 밖에 출력한 문서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조치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정하여 미리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1조(담당자의 명시)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 민원문서의 보완 요구,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그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32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략하고 해당 기관의 관인을 찍어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또는 그 민원의 성질상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 민원문서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문서를 발급할 때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특별히 본인 확인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및 추가비용과 제2항에 따른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등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민원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4절 법정민원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이하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2.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②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종류 및 민원별 처리기간·구비서류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34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절차) ①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20조, 이 영 제6조,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②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처리기간
2.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30일 이내

③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전심사의 청구 후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출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문서를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주무부서에 한꺼번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복합민원의 종류와 접수방법·구비서류·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36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실무심의회의 명칭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이하 “민원실무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 행정기관의 장은 창업·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37조(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민원실무심의회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3.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제3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3.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4.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이하 "민원조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③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그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① 법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거부처분을 받은 날 및 거부처분의 내용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결정 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제41조(민원제도의 개선)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민원제도 개선 추진 계획 및 경과
2. 개선 내용 및 실적
3. 개선에 대한 완료시점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선안을 통보한 경우
2.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선을 권고한 경우
3.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법 제40조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에서 심의·조정한 경우

제42조(조정회의의 기능) 법 제40조제2항에서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 제39조제6항에 따른 심의요청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
2. 행정기관의 미이행 또는 미개선 과제에 대한 심의 및 이행 권고 등에 관한 사항
3. 민원제도 개선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사항
5. 그 밖에 조정회의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조정회의의 구성 등) ① 조정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회의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법제처 및 관련 과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으로 한다. 다만, 민원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조정회의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7. 26.〉

제44조(조정회의의 의견 청취 등) ① 조정회의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참고인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의 요구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5조(조정회의 위원장의 직무) 조정회의의 위원장은 조정회의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46조(조정회의 위원장의 직무대행) 조정회의의 위원장이 조정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조정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8조(의견 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관 민원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이해관계인,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9조(확인·점검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중 처리기간의 경과, 구비서류의 추가 요구 및 부당한 접수 거부 등 경미한 사항은 법 제4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제50조(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민원행정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제51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려는 경우 효율적인 여론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한 결과 민원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제5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교부하는 행정기관(농협 및 새마을금고를 포함한다)의 장은 민원을 접수·교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3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22조, 제29조제1항,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6조, 제37조 또는 제39조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32022호, 2021. 10. 5.〉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민원처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3.] [행정안전부령 제121호, 2019. 6.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문서의 표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 1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문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제3조(민원의 접수)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민원 처리부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병무(兵務)·인감·세무관계 등 취급건수가 많은 민원의 접수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다.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접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민원실,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및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2명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여 신청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하나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접수 편의와 효율적인 자료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서식을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제4조(위임장)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임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하여 접수·교부하는 민원

중 영 제12조제7항 전단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는 민원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민원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은 그 민원을 처리하면 별표 2의 처리인과 직인을 찍은 후 그 처리 결과를 팩스·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원인이 교부받으려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이하 이 조에서 "교부기관"이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처리인과 직인을 갈음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9호에 따른 전자이미지관인을 찍은 후 처리주무부서의 전화번호, 담당자의 이름 등을 표시하여 교부기관에 보낼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 결과를 받은 교부기관은 별표 3의 처리인과 직인을 찍어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처리기간 관련 서식)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통지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영 제22조에 따른 확인·점검은 매달 5일까지 지난 달의 민원처리상황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8조(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민원문서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4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부서에 대한 협조 요청은 팩스·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제9조(민원문서의 보완요구) ① 영 제24조에 따른 보완요구는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8근무시간이 지난 후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을 거쳐 접수된 민원문서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민원인에게 직접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독촉장)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청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청구 접수 처리부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2조(이의신청 관련 서식)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부 칙 〈제121호, 2019. 6.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시행 2020. 6. 10.] [교육부훈령 제335호, 2020.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접수된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교육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민원인"이란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민원관리부서"란 교육부와 관련한 민원의 상담·접수·분류·관리와 민원 관련 행정 및 제도에 관한 운영·개선 등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민원처리부서"란 민원관리담당자가 분류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담당관·팀을 말한다.
5. "민원처리담당자"란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6. "민원상담센터"란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선상으로 민원실의 역할을 담당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인의 정보보호) ① 민원을 관리 또는 처리하는 자(이하 '민원처리담당자 등'이라 한다.)는 민원의 처리 또는 이첩과정에서 알게된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민원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의 사생활 또는 경영상·기술상·거래상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영 제3조에 따라 정보 보호의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민원처리 담당자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담당자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민원의 접수·처리 등

제5조(민원의 접수·분류·이송) ①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전화·방문·전자·서면 등의 방식으로 신청된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순에 따라 민원처리부서를 분류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내용이 타 기관 소관 사무로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전자적 방법을 통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및「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교육부 위임전결규정」
3. 소관 업무와의 유사성, 이전 처리 민원과의 동일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원의 핵심사항에 가장 밀접하다고 판단되는 부서

② 제1항에 따라 민원을 배부받은 부서의 장은 민원 배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민원을 배부받은 시각으로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분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부서를 재분류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분류 요청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분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④ 민원관리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민원관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전화에 의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전자민원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⑥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제출하고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의 처리)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민원을 배부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민원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민원이 처리 기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14일
2. 제도·절차 등 법령 외에 행정업무 등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고충민원 등 : 7일

제6조의2(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 등) ① 각 부서의 장은 소관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민원관리부서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민원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의 타당성, 처리기간·구비서류·수수료·서식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진단하고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민원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조정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기간의 연장)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당해 민원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한차례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도 처리가 곤란한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을 한차례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동일민원의 처리) ①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2개 이상의 행정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이송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최소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부터는 민원처리담당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2회 이상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추가로 접수되는 동일내용의 민원에 대하여는 동일민원으로 종결처리 됨을 미리 안내 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담당부서의 장은 민원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민원처리부서의 조정 등

제9조(민원심사관) ①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부 민원심사관은 민원관리부서 민원업무 담당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하며, 영 제28조에 따라 민원심사관 업무의 일부를 나눠 맡을 필요가 있을 경우 분임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심사관은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민원심사관은 소관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민원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처리부서를 지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민원조정위원회) ①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위원은 3개실에 소속된 각 주무부서의 장, 혁신행정담당관, 민원관리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각 1명 등 위원장 포함 총 8명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민원실무심의회) ① 영 제36조에 따른 사항과 민원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민원관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2개실(초·중등교육, 고등교육)에 소속된 주무부서 주무 서기관 및 혁신행정담당관실의 주무 서기관(사무관 또는 연구관), 민원관리부서의 민원담당 사무관 등 5명으로 한다.
③ 심의회는 경미한 사항이나 민원처리와 관련된 실무적인 사항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원조정위원회에 이를 상정할 수 있다.

제12조(실·국내 민원 조정 등) 실·국장 또는 민원심사관은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민원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1. 소속 실·국 내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민원처리부서 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소속 실·국 내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민원심사관 또는 민원실무심의회가 민원처리부서로 지정·결정한 사항을 당해 부서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

제4장 처리결과의 통지 및 확인·점검 등

제13조(민원처리결과의 통지)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처리를 완료한 경우 영 제29조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결과 통지는 민원인이 지정한 바에 따라 서신(국민신문고 상 'e-그린우편을 통한 서신통보'를 포함한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에게 민원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민원처리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여야 한다.

④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인이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족 또는 매우불만족으로 평가한 경우 성실하게 추가답변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① 민원심사관은 영 제22조 및 제28조에 따라 민원의 처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필요시 수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의 확인·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실이 발견되거나 민원처리 과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민원처리담당자 등에 대해 별표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의 확인·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민원 처리 및 전화민원 응대 요령 등을 교육하도록 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표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5장 민원상담센터 운영

제15조(민원상담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신속·정확한 상담 및 안내 등을 위해 민원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인원(전문상담사 등)을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화상담 또는 업무안내
2. 전화상담 데이터베이스(매뉴얼을 포함한다)의 구축 및 관리
3. 전화민원 접수, 상담 동향 분석 및 관리
4. 국민신문고 민원의 접수·분류·상담 업무 지원
5.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민원관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새로운 정책의 도입, 법령과 지침 등의 제·개정, 신규 사업의 추진 및 변경 등으로 민원접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전문상담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전문상담사는 상담 주요 내용을 별도 기록하고, 자주 질문하는 사항이나 매뉴얼 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담사례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상담사례 작성시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센터 업무의 위탁)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민원처리담당자 등의 교육·평가 등

제17조(처리민원 사후 관리) ①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만족도 및 개선사항, 친절 응대 여부 등을 조사·평가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 만족도 제고 등에 공헌한 직원의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제18조(민원처리담당자 성과보상)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분기별 민원처리 및 만족도 평가 현황을 분석하여 다수민원처리 및 만족도 평가 우수 부서(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민원처리담당자의 보호)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민원처리담당자 등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등 예방·치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335호, 2020. 6. 10.〉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31920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7.〉
[시행일 : 2021. 12. 9.] 제1조의 개정규정 중 "및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를 개정하는 부분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8. 25.〉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국무조정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의견 제시 요청)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이 사안이 중대하거나 둘 이상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사원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6조·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그 성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관련 교육의 실시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9조(적극행정 법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법률로 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통보한 법령정비안을 검토한 결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④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 입안의 기준과 제3항에 따른 법령 해석의 원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파해야 한다.

⑤ 법제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제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중앙행정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적극행정 법제 지원)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입안, 정비 및 해석 등에 관하여 자문이나 상담, 교육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위원회) ①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4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4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를 요청한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4.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 7. 27.]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차관급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 7. 27.〉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0. 8. 2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8. 25.〉

⑥ 위원회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위원회(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의 적극행정위원회를 말한다)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⑦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2021. 7. 27.〉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제13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야 한다.

1.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2. 창의적·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3.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

② 인사혁신처장은 매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선정된 우수기관에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5.〉

③ 인사혁신처장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④ 제1항에 따른 우수공무원의 선발, 제2항에 따른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실시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유공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0. 8. 25.〉

제15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 또는 유공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3.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3항제2호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4.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에 따른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 이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성과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으며,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
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 부여
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3항에 따른 포상휴가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인사상 우대 조치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0. 8. 25.〉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4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원,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 및 별표 34의2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 대상인원 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 8. 25., 2021. 1. 5.〉

④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4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 또는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5.〉

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공무원이 제13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 8. 25.〉

④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에 같은 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을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제17조(징계 등 면제)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공무원이 제13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말한다)는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징계 및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0. 8. 25.〉

제18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상권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7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제18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①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4)의 기타민원은 제외한다]의 내용을 거부하는 통지
2. 「국민 제안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통지

② 적극행정국민신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해 해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제5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방법·절차·처리기준, 처리결과 통보,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제18조의3(소극행정 신고) ①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과 신고사항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제19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① 인사혁신처장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취한 조치 및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② 인사혁신처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극행정의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자문하거나 상담, 교육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신설 2021. 7. 27.〉

제21조(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①「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은 파견 기간 중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파견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을 제14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한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원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25.]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① 이 영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5조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교육감"으로, "감사원"은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으로 본다.
2. 제8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교육감"으로 본다.
3. 제13조 중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4.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교육감"으로,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5.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교육감"으로 본다.
6.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7.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시·도교육감"으로 본다.

② 이 영을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5조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로, "감사원"은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으로 본다.
2. 제8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로 본다.
3. 제13조 중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4.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로,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5.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로 본다.

6.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7.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시·도지사”로 본다.

[본조신설 2020. 8. 25.]

부 칙 〈제31920호, 2021. 7.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 중 “ 및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를 개정하는 부분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교육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인쇄일 : 2021년 12월
발행일 : 2021년 12월
발행처 :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실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우 30119)
인쇄처 : (사)성원근로장애인협회 드림사업단
(Tel. 044-863-2923)

본 사례집은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국민참여·민원 → 민원신청 → 질의회신사례집)
사례집 내용에 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실(☎ 044-203-610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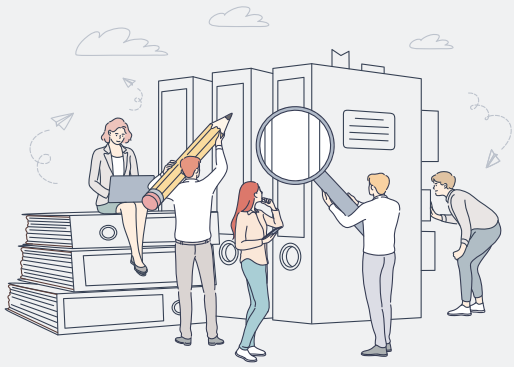

교육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www.moe.go.kr

교육부